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I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17.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7. 8. 1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세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석 등 유형별 분석주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I. 개 요 / 3

1.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3
가. 현 황	3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6
2.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9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9
(1) 현 황	9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9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13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17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7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 19

1. 위원회 공통	19
가. 현 황	1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9
(1) 국회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집행 문제(전부처 공통)	19
(2) 일부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 개선 필요(전부처 공통)	21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2
2. 국회운영위원회	23
가. 현 황	23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3



3. 법제사법위원회	25
가. 현 황	2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6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필요(대법원)	26
(2) 교정기관 공공요금 등 적정 예산 편성 및 과밀수용 해소 필요(법무부)	27
(3)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법무부)	28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8
4. 정무위원회	32
가. 현 황	3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3
(1)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공정거래위원회)	33
(2) 110콜센터 통합운영의 내실화 필요(국민권익위원회)	34
(3) 보훈진료비 산정 체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국가보훈처)	35
(4)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추진 비용의 민간부담 전가 개선 필요(금융위원회)	36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7
5. 기획재정위원회	45
가. 현 황	4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6
(1) 양도소득세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46
(2) 국세물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기획재정부)	47
(3)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49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조기 개통에 따른 부작용 발생(기획재정부)	51
(5) 광역두만강개발프로젝트(GTI) 사업추진 실적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52

CONTENTS

(6)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54
(7) 민간협력차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의 효과성 분석(기획재정부)	59
(8)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60
(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기획재정부)	61
(10)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국세청)	64
(11)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관세청)	66
(12) 컨테이너 검색기의 적극적 활용 필요(관세청)	68
(13) 시설비 낙찰차액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조달청)	70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2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5
가. 현 황	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6
(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적정 편성 미흡 (舊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2)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인건비의 현실화 미흡 (舊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3)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다편성 시정 미흡 (舊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
(4) 위탁연구과제 수의계약 조건의 강화 필요(원자력안전위원회)	79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1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6
가. 현 황	8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87
(1)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이전용 최소화 필요(교육부)	87
(2)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과다(교육부)	88
(3) 한국장학재단 집행수준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교육부)	89
(4)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	90
(5)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92
(6) 문화재 보수정비의 사업의 실행행률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청)	93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4
8. 외교통일위원회	100
가. 현 황	10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0
(1) 전략사업비의 적정 규모 편성 및 별도 사업으로 분리 필요(외교부)	100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사업 진전 미흡(통일부)	102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5
9. 국방위원회	107
가. 현 황	10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8
(1) 연례적인 정원 대비 인력초과 운용 해결 필요(국방부)	108
(2) 건강보험부담금 급증에 따른 군 의료체계 조속한 개편 필요(국방부)	109
(3) 국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방위사업청)	110
(4) 사회복지요원 소집 적체 해소 확대 부적정(병무청)	111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2

CONTENTS

10. 행정안전위원회	116
가. 현 황	11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6
(1)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舊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116
(2) 보통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와 용도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 (舊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118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인사혁신처)	120
(4) 과태료·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舊 국민안전처/現 행정안전부)	123
(5)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감축을 위한 대책 강화 필요(경찰청)	124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6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2
가. 현 황	13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3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국내 반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133
(2) 재해대책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금리인하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34
(3) 판매장개설 지원 사업 준치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35
(4)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목적 외 사용(해양수산부)	136
(5)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사업의 재이월금지 원칙 위반(해양수산부)	137
(6) 방제정건조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舊 국민안전처/現 해양경찰청)	138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1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6
가. 현 황	14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7
(1) 에너지 R&D 전담기관의 운영예산 분리편성의 실효성 확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147
(2)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노력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47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 창업실적 저조 문제 (舊중소기업청/現중소벤처기업부)	149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舊중소기업청/現중소벤처기업부)	150
(5) 특허청 여유재원의 축소를 위한 노력 필요(특허청)	150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2
13. 보건복지위원회	155
가. 현 황	15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6
(1) 조정계수 반영을 통한 생계급여 사업 감액편성 지양 필요(보건복지부)	156
(2)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보건복지부)	157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금 징수노력 제고 필요(보건복지부)	158
(4) 국립병원 임상연구비(R&D)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158
(5)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조치완료 보고 부적절(보건복지부)	159
(6)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보건복지부)	161
(7) 축산물 HACCP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지원기준 마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162
(8) 의료기기단속 담당자 확충 미흡(식품의약품안전처)	163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65



CONTENTS

14. 환경노동위원회	169
가. 현 황	169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0
(1)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170
(2)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환경부)	171
(3)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고용노동부)	172
(4) 재활공학연구소의 자체수입 확대 필요(고용노동부)	174
(5)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기상청)	175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77
15. 국토교통위원회	181
가. 현 황	18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82
(1)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중 확대 필요(국토교통부)	182
(2)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183
(3) 광역 BIS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국토교통부)	184
(4)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국토교통부)	185
(5)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강구 필요(국토교통부)	186
(6)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7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88
16. 여성가족위원회	191
가. 현 황	191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91

I. 개 요

1.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가. 현 황

국회는 2016년 9월 2일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¹⁾에 따라 시정 요구 2,061건, 부대의견²⁾ 27건을 채택하고, 동 법 제127조의2³⁾에 따라 3건⁴⁾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하였다.

시정요구 제도는 2003년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해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국회법」에는 변상과 징계만 예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다. 하나의 시정요구건에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126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의 601건, 시정 382건, 징계 1건, 변상 1건 순이며, 이 중 50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김혜미 예산분석관(hyemi@assembly.go.kr, 788-4629)

-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3)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감사요구는 ①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 ②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실태, ③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었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 및 조치대상 기관]

시정요구 유형	적용 기준	조치대상 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 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 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 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 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가이드(편람)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합계
결산	1	1	368	592	1,123	(49)	2,036
예비비	0	0	14	9	3	(1)	25
합계	1	1	382	601	1,126	(50)	2,061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2016.9)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1회계연도 결산 시 1,236건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시 2,06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심사결과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정요구	1,236	1,215	1,541	1,812	2,061
부대의견	30	33	26	25	27
감사요구	6	3	4	4	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2016.9)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상은 최근 5년간 1건, 징계는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한 반면 제도개선은 최근 5년간 3,8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11	0	0	310	400	577	(51)	1,236
2012	0	0	328	354	537	(4)	1,215
2013	0	2	385	464	723	(33)	1,541
2014	0	2	442	526	875	(33)	1,812
2015	1	1	382	601	1,126	(50)	2,061
합계	1	5	1,847	2,345	3,838	(171)	7,865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로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2013회계연도 또는 2014회계연도 결산의결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사항은 22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54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⁵⁾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2011회계연도 166건에서 2015회계연도 221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단위: 건, %)

	2011 회계연도	2012 회계연도	2013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66	190	201	210	221
전체 시정요구	1,236	1,215	1,541	1,812	2,061
반복 시정요구 비율	13.4	15.6	13.0	11.6	1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분석」(2016.10)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3회계연도 또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반복 시정요구 된 사항 중 2016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실적은 전혀 없다.⁶⁾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에 대해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이자율을 낮추도록 반복 시정요구하였으나, 2016년 재해대책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9.1%로

5)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보고서 > 분야별보기> 예산·결산분석에 게시(343번 게시됨)되어 있는 「2017년도 예산안 거시총량분석(2016.10)」에 첨부파일로 수록되어 있다.

6)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pp.136~137

저조하고, 금리(1.5%)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⁷⁾

국가보훈처에 대해 88골프장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도 88골프장 매각 대금을 계상하였다.⁸⁾ 또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으나, 2016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14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연말 기준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⁹⁾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반복 시정요구하였으나, 201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한강예술통구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사용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시정받았음에도 2017년 4월까지도 사업부지 소유주인 KOBACO와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조치중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대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2016년에도 동 사업의 실집행률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60%에 불과하였다.¹¹⁾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2016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2,258억원으로 나타났다.¹²⁾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사업은 2013~2015년 결산심사시 국고지원금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은 2,503억원이고, 2016년부터 예산부터는 조정계수를 도입(2016년 275억원, 2017년 46억원)하여 예산을 감액함에 따라 미지급금 규모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¹³⁾

7)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pp.68~70

8)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pp.52~53

9)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pp.74~75

10)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133~135

11)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pp.194~196

12)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pp.26~28

13)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pp.152~153

[조치가 미흡한 반복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사례]

시정요구 사항	부처	시정요구 여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3 회계 연도	2014 회계 연도	2015 회계 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필요	국세청	-	○	○	집행 실적이 전혀 없음
재해대책비 예산 과다편 성 방지	농림부	-	○	○	재해대책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9.1%로 저조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계획 마련 필요	국가 보훈처	○	○	○	수입에 88골프장 매각 대 금 반영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 의 실집행 부진	국가 보훈처	○	○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59.5%로 저조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집행실적 관리 강화 필요	문체부	○	○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52.0%로 저조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의 조속한 추진 필요	문체부	○	○	○	부지사용계약 미체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 집행률 제고 필요	문화재청	○	○	○	실집행률이 60.4%로 저조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	보건 복지부	-	○	○	의료급여 미지급금 2,258억원 발생
차상위계층 지원 국고보 조금 미지급금 정산 필요	보건 복지부	○	○	○	조정계수 도입(2016년 275억원)하여 미지급금 규모 확대

2.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 황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2,045건(정보위원회 소관 16건 제외)에 대하여 1,827건(89.3%)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18건(10.7%)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수와 비율이 2014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1회계연도 결산	1,236	1,058	168	13.6
2012회계연도 결산	1,215	960	255	21.0
2013회계연도 결산	1,523	1,251	272	17.9
2014회계연도 결산	1,812	1,624	188	10.4
2015회계연도 결산	2,045	1,827	218	10.7

주: 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6.5)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라고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73건(4.0%)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지적된 예산과다 편성 또는 실집행을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증액 또는 감액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예산을 2015년 예산 대비 706억 6,600만원 감액하여 3,5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예산 대비 수납률은 78.4%로 나타나 예산이 여전히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예산의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2016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고 2017년 예산은 수요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6년 결산 결과 위탁사업비와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각각 81.0%, 76.2%로 재차 부진하게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예상 자금운용수익률을 시장수익률보다 높게 예측하여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안 편성시 예산 자금운용수익률을 2016년 4.6%에서 2017년 4.19%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 결산시 자금운용수익률 2.71%인 점을 고려하면, 세입 예산의 과다편성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17년 예산을 2016년 예산 대비 172억 8,000만원 감액하여 1,982억원 편성하였으나, 2016년 집행액(1,428억 3,700만원)보다는 과다하므로 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조정계수 반영을 통해 의무지출인 생계급여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 정밀한 추계를 통해 2017년 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하고 조정계수를 감액하여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도 여전히 1,453억원의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둘째,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16년에도 여전히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국토교통부는 LPG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집행실적(실집행률 4.9%)이 부진하고, 활성화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 수요부족과 과다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을 축소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지원 대상에 전문유통업체와 개인사업자도 포함하고, 지원 사항에 신규 개설 뿐만 아니라 확장에도 자금이 용자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용자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부터 용자계정을 총괄계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용자사업의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용자계정을 총괄계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다. 용자규모가 2015년 455억원에서 2016년 94억원으로 더욱 위축되어 용자계정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용자계정의 존치 여부를 적극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2017년 예산 편성시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및 진료비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2012년 예산안 산출시부터 반영되었던 부분이므로 평균연령이 높고 복합 질환을 가진 보훈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진료비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 인건비를 유사기관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2017년 중계사의 월 근로보수를 3.3%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 인건비보다 수화통역센터(서울시)는 19.4%, TRS센터(경기도)는 8.7%의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산금 수납률을 제고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체납관세 및 가산금

징수활동을 강화하려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16년 가산금 수납률은 1.6%로 2013년 4.3%, 2014년 2.7%, 2015년 3.7% 보다 낮게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을 확충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2015.8), 「의료기기법 개정」(2015.12) 및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운영(2016.3) 등을 근거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까지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은 종전과 같은 15명에 불과하여 의료기기 단속 담당자를 확충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조치완료된 사항과 조치중인 사항에 대한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연구용역 수행이나 관계 부처간 협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치만 이행하고도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①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②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분만취약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 치료보호사업의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시정요구에 대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실시하였다는 사유로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국회가 요구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에너지 R&D 전담기관의 운영예산과 R&D 사업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예산요구안에 에너지 R&D 전담기관 인건비의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요구함으로써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이 반영될지 불투명하므로 조치중인 사항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18건을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결산이 의결된 해의 12월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다음연도 5월 31일에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추가로 보고하지 않아,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 중으로 나타난 사항의 최종 이행여부를 점검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국회법」 제84조에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018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 원인을 ① 법령 개정 필요, ② 예산 조정 필요, ③ 개선 방안 시행 중이나 효과 미도출 및 ④ 대책 수립 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정부는 다음의 표와 같이 27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에 사업의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사업비 확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중인 시정요구 사항]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회	의정활동지원인턴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조정 방안 검토	2018년도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한 기본급(135만원 → 180만원)과 각종 수당을 증액 요구하여 총 1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
법무부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치료감호소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2018년 53억 5,100만원을 요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다한 출장비 지출의 절감방안 마련 필요	세종 연구단지 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마련은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금융위원회	내집연금 3종세트의 재원마련대책 필요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부출연금(679억)을 요구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 분담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정적 상환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	예산안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규모의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은 국가재정규모와 상환기금의 국채잔액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
국가보훈처	토지대여료의 수입 예산 계상 필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입(4,000만원)으로 반영 요구
	보훈기금 복지시설(아파트) 매각 필요	비연고지 직원의 주거 안정을 감안한 관사 예산 추가 확보(2018년도 312백만원 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
미래창조과학부 (現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무선마이크 이용자 지원 강화	2018년까지 700MHz 무선마이크 정비 완료를 위해 2018년 예산(22억원)을 확보할 계획
	보안관제 위탁비용 징수 및 사업예산 조정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징수액과 연계해 예산 감액 요구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교육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시 근거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대학 중심 지원 필요	2018년 예산편성 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바, 국회, 시도교육감,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추진 중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와 문예기금 간 조정방안 검토 필요	2018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술자료원 등 통합기관 예산을 문예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국방부	현역 당직근무수당 인상 필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시 현역 당직근무비 인상에 대해 지속 협의할 예정
행정자치부 (現행정안전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의 과목구조에 부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2018년도부터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역발전프로그램으로 이관 조치할 계획
	공공요금 관련 예산의 연례적 조정 개선 필요	2018년도 공공요금 346억 5,300만원 요구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시설개선 필요	환경개선이 필요한 교육생 생활실(현재 8인 1실)을 2인 1실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공안직 수준의 보수 지급 필요	공안직 수준 보수 조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및 구체적 조정 방안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국고지원비율 조정 필요	2018년 예산안 편성시 국고비율 상향 추진중
해양수산부	피해보전직불금 내실화	재정당국과 계획액 증액을 위해 지속 협의 중
산림청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필요성 검토	2018년 산주·임업인의 자연재해 피해경감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산업통상 자원부	전력기금 여유자금 규모 축소 및 운용 수익률 제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보건 복지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 미지급금 정산 필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 에 노력할 예정
식품 의약품 안전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의 확대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예산 확보 (8억 1,600만원) 추진 중임
국토 교통부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 대책 마련 필요	2018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용 2018년 예산(100억원)을 요구
	「댐설계기준」에 맞는 비상방 류설비 설치 및 적정규모에 대한 조사 검토 필요	2018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용 2018년 예산(100억원)을 요구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 금의 재정안정화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부 족 및 복권기금 의존도 편중 문제 등을 해 소하기 위하여 회계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 업 이관 필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 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 을 추진 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15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 27건 중 2017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 18건, 조치 중 9건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2013회계연도 42%에서 2015회계연도 33%로 낮아졌으나, 2014회계연도 16% 보다는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부대의견 건수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3회계연도 결산	26	15	11	42
2014회계연도 결산	25	21	4	16
2015회계연도 결산	27	18	9	3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6.5)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는 감사원이 3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감사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감사원은 국회가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2016.9.2)한 3건에 대해 2016년 12월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다.

14)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 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 요구 내용	결과보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임대형 민자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지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정 소요가 큰 환경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재정사업보다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와 수익률 등에 대하여 검토·분석하였으나 BTL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재정사업보다 특별히 낮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 다만, 실시협약,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운영비 협상업무 태만 및 불철저’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됨
[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기금들(29개)을 대상으로 미수납채권 회계처리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29개 기금 중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15개 기금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실제로도 발생하지 않는 등 수입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29개 기금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나머지 14개 기금은 ‘기금 결산작성지침 불명확’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수입결산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됨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다수 부처·기관이 수출지원사업을 유사·중복(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되게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에서 국비·지방비 동시 지원 등 일부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됨 나머지 ‘무역사절단 사업’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자료: 감사결과보고서(감사원)

Ⅱ.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1. 위원회 공통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전부처 공통 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13건이고,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5건이며,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회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 집행문제’ 등 2건이다.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공통		조치완료	조치중
공통	2	3	13	(1)	17	15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회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집행 문제(전부처 공통)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총지출 기준 4조 9,192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회 감액사업에 대해 이·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에서 예산을 감액한 사업을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용을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시 감액된 사업을 정부가 감액 취지에 맞지 않게 증액하여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의 대학정책관 기본경비 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은 201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14~2015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시 무기명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9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6년 집행액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4,8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

국방부의 정책활동지원 사업 내 정책홍보관리 예산은 2016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부처 홍보활동 예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억 7,500만원이 감액¹⁾된 25억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북한 도발 격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등으로 3억 9,400만원을 조정하여 증액하고 27억 8,300만원²⁾을 집행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사업은 2016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당초 행정자치부가 행사개최비용으로 편성한 예산안에서 1억원이 감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비슷한 유형의 체험행사를 2회 개최하면서 당초 예산액 15억원에서 3억 6,800만원을 초과한 1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다.

1) 전부처 홍보예산을 10%씩 일괄 감액하였다.

2) 본예산(25억 100만원)과 전년이월(1억 2,400만원), 조정을 통한 증액(3억 9,400만원)으로 2016년 예산 현액은 30억 1,900만원이었으나, 27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2억 1,200만원) 및 불용(2,500만원)이 발생하였다.

(2) 일부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 개선 필요(전부처 공통)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① 추경 편성 시 사업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연도 내에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②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 실시 이전에, 본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정부의 추경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는 일부 부분에 대한 조치에 불과하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집행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117개 사업 중 추경증액분에 대한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7개³⁾로 나타났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 집행 시에는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출연·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117개 사업 중 66개 사업은 공사·공단에 대한 출연과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피출연·보조기관의 추경 증액분에 대한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15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중앙정부의 집행가능성 외에도 피출연·보조기관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실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2,280억원 전액이 미집행되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비비의 특성 상 예산 미집행이 문제라고 볼 수 없어 동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위원회 공통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개선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건이고, 대책 수립 중인 사항은 ‘예술·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1건이다.

[위원회 공통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	정부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성과지표 매뉴얼 개발 및 매뉴얼에 대한 각 부처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17.5월) 등 성과지표 적정화를 위한 조치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
2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비 확보 여부 등 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시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3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교육청 수요에 기반한 규모 조정을 통해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회운영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48건으로 시정 6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32건이고,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2016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45건이며, 조치중 3건으로 보고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	0	1	(0)	4	4	0
대통령경호실	1	3	0	(0)	4	4	0
국회	1	4	28	(1)	32	29	3
국가인권위원회	1	4	3	(0)	8	8	0
합계	6	11	32	(1)	48	45	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3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평가 업무에 대한 대비 필요’ 1건이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정활동지원인턴 처우 개선 및 계약기간 조정 방안 검토’ 1건이며,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1건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국회]			
1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평가에 관한 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 조세특례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조세특례 평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에 방법론, 평가 매뉴얼 등을 마련하였고, 조세특례 평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평가 업무의 법적 근거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지원인턴의 보수의 적정화 및 계약기간조정에 관하여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7년 예산안 심의 확정 결과 인턴 보수가 일부 인상되었으나 적정한 보수인상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한 기본급(135만원 → 180만원)과 각종 수당을 증액 요구하여 총 1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3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등의 내용점검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실시하고 있고, 초안 완성 후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발간 단계에서는 간행물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과 피드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법제사법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99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63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조치완료 87건, 조치중 1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할 필요’ 등 3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대법원	4	13	8	25	22	3
감사원	4	6	5	15	15	0
헌법재판소	0	2	11	13	13	0
법무부	2	5	27	34	26	8
법제처	0	0	12	12	11	1
합계	10	26	63	99	87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대법원	0	0	0
감사원	3	1	2
헌법재판소	0	0	0
법무부	0	0	0
법제처	0	0	0
합계	3	1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대법원의 면허료 및 수수료의 징수결정액이 매년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 2015년도 수납률은 69.2%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제 수납실적에 근거하여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년 예산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실제 추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2015년 예산 대비 16.8% 감소한 3,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세입예산안 역시 2016년 예산에서 2012~2015년 결산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원의 201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은 3,500억원이나, 수납액은 2,743억원으로서 예산과다편성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2016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대비 수납률은 78.4%로서 여전히 과다편성되고 있다. 2016년도 수납률은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2013	394,930	394,930	394,930	290,190	290,190	73.5
2014	420,655	420,655	420,655	296,903	296,903	70.6
2015	420,660	420,660	420,660	291,095	291,095	69.2
2016	350,000	350,000	350,000	274,302	274,302	78.4
2017	338,900	338,900	-	-	-	-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료 등 세입은 전년도 수납액과 접수건수 등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나, 최근 4년간 수납액은 2,900억원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으므로, 실제 수납액에 기초하여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교정기관 공공요금 등 적정 예산 편성 및 과밀수용 해소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교도소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인원 감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과밀수용종합대책의 성과분석(2015. 9.)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과밀수용종합대책(2016. 7.)을 시행하여 대도시 인근 초과밀 교정시설 분산 수용을 통하여 수용밀도를 조절하는 한편, 수용거실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말 교도소의 연평균 수용인원은 전년(53,892명) 대비 2,603명(4.8%) 증가한 56,495명으로, 2016년 예산편성 기준인원 49,500명 대비 14.1% 초과, 교정시설 수용정원 46,600명 대비 21.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밀수용은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더욱 심화되어 정원 대비 24.1% 초과 상태¹⁾이며,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헝가리(13.1% 초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결정(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이 내려진 만큼, 법무부는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노후 교정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재소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수용정원 47,000명 대비 58,345명(수용정원 대비 124.1%)

(3)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청사관리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2015년 기준시급 5,580원)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2015년 기준시급 8,019원)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청사관리용역 근로자의 보수를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2017년도 관련 예산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사업²⁾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예비비로 출입국 보안관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동 용역 계약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2016년 시중노임단가(8,210원)보다 낮은 8,018원, 8,209원을 적용하였고, 낙찰률까지 적용된 실제 지급단가는 7,241원, 7,170원으로 시중노임단가의 88.2%, 87.3% 수준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각급 소속기관³⁾ 단위에서도 향후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2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관련 법령 개정’ 등 3건이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피치료감호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1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가산금 미수납액 관리 강화’ 등 3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판결문 비실명 처리기준 재검토 및 판결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2-300

3) 검찰청 65곳, 교정청·교도소 56곳, 보호관찰소 63곳, 소년원·치료감호소 29곳, 출입국관리사무소 46곳, 법무연수원 2곳,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곳(2017. 3. 1. 기준)

문열람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 3건이며,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은 '특별감찰관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필요' 등 2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대법원]			
1	대법원은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가산금 미수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진행중에 있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주택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어 주택사업이 재개되면 토지대여료 및 변상금의 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현재 사건이 2심에 계속 중이며, 신속하고도 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념할 예정임
3	판결문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실명처리 기준(대법원예규)을 재검토하고, 판결문열람제도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개인정보 비실명화 작업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법원은 비실명화 작업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할 권한이 없음. 또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2조에 따라 판결서 열람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판결서 1건 공개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민원인은 수수료 부담없이 임의어 검색으로 원하는 종류의 판결서를 찾을 수 있음
[법무부]			
4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가 인건비성경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공익법무관법 시행령」과 「공무원 수당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공익법무관 수당(기본급의 8%)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6월)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7.18 국무회의 상정예정)되었고, 법무활동장려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금(월 25만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은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개정할 예정임. 이에 맞추어 2018년 예산에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감액하고, 공익법무관수당 및 법무활동장려금으로 24억 3,4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임
5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범죄신고자 보상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임
6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보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우수 청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중임
7	법무부는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치료감호소의 노후시설 보수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현재 치료감호소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18년 마무리 사업비 53억 5,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에 의사 3명, 간호전담 인력 45명을 요청하였음. 장기적으로 과밀수용 해결 및 치료효과 극대화 등 개별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8	법무부는 성인지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사업 관련하여, ‘17년 5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성과지표(성폭력사범 처리율)를 개발하여 반영하였음
9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사업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예비비 활용을 줄이고, 예산 집행에 관한 방향을 소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료팀 등과 협의하여 적정예산 편성에 노력할 계획이고, 소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진행 중인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에 관한 방향을 공유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0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소관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조치 불가	조직과 예산규모가 적어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고, 예산안 독자제출권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11	특별감찰관은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 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조치 불가	현재 특별감찰관 사표수리에 따라 특별감찰관보 및 특별감찰과장 등도 퇴직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특별감찰관법에서 규정한 권한대리자 자격유무로 사실상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음
[법제처]			
12	법제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수입에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비공무원 대상 수강료 징수사례를 참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검토 중이므로 개선효과 도출에 시간이 필요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정부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부위원회 소관은 총 148건으로 시정 46건, 주의 56건, 제도개선 72건이며, 이 중 26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17건이며, 조치중 3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정부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보훈의료 진료 비 산정 체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등 5건이다.

[정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	14	19	(4)	39	28	11
공정거래위원회	6	8	14	(3)	25	21	4
금융위원회	13	20	18	(18)	33	24	9
국민권익위원회	1	5	9	(0)	15	14	1
국가보훈처	16	9	12	(1)	36	30	6
합계	46	56	72	(26)	148	117	31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정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금융위원회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원칙을 명확히 수립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예산 편성 시 신고포상금 예산을 적극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상황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수가 변동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4건, 8억 2,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2월말 ‘건설 에어덕트 담합’ 사건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포상금 산출액 4억 9,228만원 대비 642만원 적은 4억 8,586만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하고 지급하였다.

공정위는 신고인에게 나머지 금액은 공익신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신고자의 신뢰를 침해하며, 신고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원칙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원회의 의결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정위와 달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산 상황에 따라 신고자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110콜센터 통합운영의 내실화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110콜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한 중립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콜센터 통합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110콜센터 상담사 급여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입찰시 상담사 급여의 최저가 설정 또는 상담사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사 대상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체상담 종결비율이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도 상담사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여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체 종결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110콜센터의 인지도 향상도 크지 않아 통합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 110콜센터의 전체 콜수는 279만 건으로, 자체종결 콜수는 81.5%인 220만 건이다. 권익위 측의 설명과 같이 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계·통합 중인 콜센터 30개 중에서 부처 개별 대표번호가 폐지되어 완전히 통합된 경우는 5개에 불과하다. 또한, 110콜센터와의 연계를 안내하는 경우는 9개에 불과하다. 110콜센터의 인지도가 2014년 이후 34~37%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진적인 개별 대표번호 폐지 계획 및 안내 멘트 등으로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의 전문성·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콜센터 통합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1) 110콜센터의 자체종결 비율은 2012년 85.9%, 2013년 84.9%, 2014년 85.9%, 2015년 85.5%, 2016년 81.5%로 나타났다.

(3) 보훈진료비 산정 체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국가보훈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보훈병원 진료비 등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2017년 예산 편성시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및 진료비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진료인원 증가 추세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실제 진료비 소요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료비 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진료인원은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평균증가율을, 진료단가는 국민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1인당 입·내원 평균증가율 및 진료비 평균증가율은 2012년 예산안 산출 시부터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과도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다.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차 범위가 큰 산정 방식을 변경없이 사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평균연령이 높고, 복합 질환 등을 가진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맞춘 진료비 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추진 비용의 민간부담 전가 개선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 금융개혁 정책홍보를 위한 TV광고 사업에 소요되는 4억원의 비용을 은행연합회 등 민간기관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비용분담 요구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안 방지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정책 홍보사업 추진 시 민간 금융협회 등에 비용을 분담시키는 일은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근거가 될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해당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2016년에도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추진 비용 11.5억원을 민간에 분담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만 아니라 2015년도 감사원 감사(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2015.11)²⁾ 및 2016년 국정감사³⁾ 등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도 금융개혁 관련 정책홍보 사업 추진비용 7.2억원을 금융권 협회에 전가하였으며, 창업·일자리 박람회 추진 비용 5억원 중 4.3억원을 금융권 협회와 은행권으로부터 조달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정책 홍보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비용을 민간에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금융 부문의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권 협회 및 은행권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추진 사업의 민간 비용 분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을 수시로 부담하게 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감사원,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2015.)

3)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들을 동원하여 금융개혁 홍보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들로부터 파견인력을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정무위원회, 「2016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7.)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31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과징금 채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 5건이며,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청사이전 필요’ 등 5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공공기관 갈등관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등’ 등 5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비용 차입금 상환에 대한 지원 필요’ 등 16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출장인원의 최소화, 화상회의의 활성화, 학술회의 등의 연구기관 소재지 개최 등 지방이전 후 급증하고 있는 출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기관의 지방이전 안정화 단계에 맞추어 서울회의 개최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가급적 부서별 출장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화상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나, 세종 연구단지 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마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할 문제임
2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갈등 예방 및 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처 간 연구사업 등 유사중복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무조정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갈등관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각 부처의 갈등영향분석 확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내실화,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예정임.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 방지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2016.12.14)하였고, 갈등관리교육은 맞춤형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2017.3.8)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숙한 연구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청사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현 청사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추어 청사 재이전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음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차입금 발생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차입금 관련 기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강구, 독신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우수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후 보장제도 개선, 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 탄력적 근무·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및 이전지역 주요 대학과의 인적 교류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중임
6	국무조정실은 연구회가 26개 연구기관의 경영과 연구기획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경사연 이사장의 비상근 제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운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와 협의 중임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자체 개선노력과 관련된 근거 규정의 정비 및 재정당국의 협조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연봉과 성과급 지급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 내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차별금지를 명문화 하였으며(2016.4.29. 제215차 임시이사회),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현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시 현행 정부의 정보화 예산편성 내역을 참조하여 동일 항목에 통일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성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정보화예산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보화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분리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또한 정보화 담당인력은 각 기관의 규모, 정보화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충, 정보화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할 것 (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출연연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와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자체수입산정 방식을 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이 직전년도 자체수입만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입이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능률성과급을 자체수입예산에 일정비율 편성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합리적인 자체수입 예산편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수탁사업 수입 결산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접비 계상 기준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자체수입 중 수탁용역사업비와 정부대행사업비 수입항목 결산 시 직·간접비에 대한 구분을 명문화 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제233차 정기이사회(2017.3.27)) 함으로써 기관별 직·간접비 배분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결산 시 간접비 계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공정거래위원회]			
12	공정거래위원회는 채납자의 금융자산 확인이 가능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납자의 소득·재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금융위원회 의견과 타 부처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13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위원제도 적극 활용, 조직·인력 재평가 및 재구조화 등의 노력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신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 수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 중이고, 분쟁조정 사건처리 인력 증원, 분쟁조정회의 개최 확대를 위한 2018년 예산 요구 및 협의 중임
14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 지연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증가로 세입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기획재정부(국고국, 예산실)와 예비비 사용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임
15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역사업인 행정소송 수행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패소율과 같은 지표를 공정거래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당국이 예산규모에 비해 세부사업의 수가 많다고 지적함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개편(35개→16개)한 것에 기인하나, 행정 소송 수행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음. 행정소송수행사업의 성과지표로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을 2017년 성과계획서부터 신규 설정하도록 함
[금융위원회]			
16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 집연금 3중세트’의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재원마련대책을 세울 것.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수요 확대를 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주택연금의 정책자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주의 및 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부출연금(679억)을 요구하여 기재부 심의 중임. 또한, 9억원 초과 주택 가입 허용 등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9억원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월지급금을 조정하여 고가주택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월지급금 지급을 방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은 진행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7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상환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채의 원금을 상환해 나갈 것. 금융위원회는 금리 하락과 우체국수신규모의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부담률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주의 및 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예산안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규모의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예산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은 국가재정규모와 상환기금의 국채잔액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음. 또한, 우체국특별회계의 부담률(0.1%)과 관련해서는 2018년 정기 재계산시 금융권특별기여금(0.1%)과의 형평성 및 공적자금 상환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인 금융권, 우체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 예정이나, 특별회계의 부담을 줄일 경우 일반회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18	시장안정 P-CBO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신용보증 기금 등이 협력하여 시장안정 P-CBO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마련할 것 등(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신보 등 관계기관이 시장안정 P-CBO와 관련한 운영 경과 및 평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와 2017년 6월 5일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진행 중이고, 2017년 9월 중 용역 완료가 예상됨
19	금융위원회는 정책기관별로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개선하여 그 기준이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주의 및 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6월말 보증기관별 한계기업들에 대한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한계기업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고, 저성과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등을 통해 정비하였음
20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 기구 설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된 민간투자 및 공공부문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해운보증 기구 설립)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금융위원회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구체적인 출자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출자(2,700억원)는 2017년 중 완료 예정이며, 민간부문에서도 2017.6월말 478억원이 출자되었음. 민간부문의 출자가 해운업 부진 등으로 예정보다 미흡한 상황이나, 해운업계 및 조선업계 등의 출자를 적극 독려하는 등 민간의 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21	금융위원회는 한시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활동기간에 부합하게 편성하고, 활동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등(주의 및 제도 개선)	대책 수립 중	향후 한시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활동기간에 부합하게 편성하고, 활동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22	금융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도한 인력파견 및 팀제 운영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한 임시직제의 설치를 지양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 및 인력증원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 및 훈령 등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등(시정 및 주의)	대책 수립 중	2017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초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2017.5.31)하였으며, 실무협의를 진행 중임. 또한, 임시조직(팀)의 설치근거(기관장 결재)를 마련(2017.6.29)하였으며, 직제시행 규칙 반영(총액인건비제 활용) 및 정규 조직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
23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 되도록 할 것 등(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02년 상환대책 마련 당시 국회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쳐 합의된 사항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 제3항 및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에 반영하였으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은 이를 수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최종 회수규모가 비교적 정확히 예측되는 시점에 정부-금융권 등 이해당사자들과 폭넓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잔여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귀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4	금융위원회는 소유관념 대신 관리관념이 지배하는 공공부문에서 관리 및 매각업무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할 것.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지연을 감안한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방안을 강구하며,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관리부실로 인한 기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대책 수립 중	주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상 개선방안 마련 중이고, 경영정상화과정 및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 매각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및 이를 전제로 한 자구 계획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2017.3.23.)하여 시행중이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초과회수시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재정 재계산 결과 반영을 통한 매년 예산을 규칙적으로 편성하는 등 공적자금상환기금 상환계획을 개선할 것(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금에 초과회수분이 존재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이해당사자들과 폭넓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18년 정기재계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규칙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상환계획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국민권익위원회]			
25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이행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행 여부·미이행 기간 관리 및 장기 미이행 사례 공개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중	2017년 정보화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 설계중(BPR/ISP)이고, 2018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또한, 서면조사를 통한 이행실태 점검과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입법철회·정책폐지 등으로 사후관리 실익이 없는 과제는 미이행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관리종결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국가보훈처]			
26	국가보훈처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지원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완료(6.19), 법제처 심사의뢰(7월 중) 예정임
27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입법예고(2017.6월), 법제처 심사(2017.8월), 국회제출(2017.10월))이며, 지자체의 현충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협의(기재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28	국가보훈처는 진료비 정산 적용범위에 고엽제 환자 검진비용을 제외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시정)	법령 개정 필요	고엽제환자 검진비용을 포함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7조(정산 적용범위)를 개정완료함(2017.6.28)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29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사용목적이 없어진 자산은 매각할 것(시정)	예산 조정 필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비연고지 직원의 주거 안정을 감안하여 관사 예산 추가 확보(2018년도 3억 1,200원 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음(2017년 3월 대전청 복지시설 매각 완료)
30	국가보훈처는 매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대여료를 추계하여 기금 수입 예산에 계상하고, 그 밖에 누락되는 수입이 없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주의)	예산 조정 필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입으로 반영 요구하였음(4,000만원)
31	국가보훈처는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골프장 매각대금의 연례적 수입계상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계획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입계획 작성 지침 기본방향에 따라 골프장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음. 다만, 4회에 걸친 매각유찰과 불리한 매각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매각 시기나 매각 가능성을 예단하기 곤란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보훈기금 증식을 위한 대체 사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입 예산 제외문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64건으로 시정 32건, 주의 78건, 제도개선 63건이며, 이 중 9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56건이며, 조치중 8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8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6건,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양도소득세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13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20	48	31	(7)	92	89	3
국세청	0	6	14	(0)	20	20	0
관세청	4	8	11	(2)	21	21	0
조달청	3	7	4	(0)	14	12	2
통계청	5	9	3	(0)	17	14	3
합계	32	78	63	(9)	164	156	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8	6	2
합계	8	6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양도소득세 세수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자산시장 및 관련 세수의 변동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세수추계 모형의 보완 및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는 2015년 세입결산 결과 추경예산 대비 세수실적 오차율이 큰 세목이 증권거래세(20.1%, 7,816억원), 양도소득세(13.2%, 1조 3,859억원), 종합부동산세(9.2%, 1,179억원) 등 모두 자산 관련 세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관련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양도소득세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초과수납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양도소득세를 본예산 11.0조원 대비 1.1조원(10.3%) 증액된 12.1조원으로 경정하였다. 이는 본예산을 통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전망이 상당히 부정확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NABO의 양도소득세 전망에 따르면, 2017년 양도소득세는 12.6조원이 수납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에도 불과하고 약 0.5조원의 초과수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양도소득세 전망]

(단위: 억원)

본예산 (A)	추가경정예산안		NABO 전망		
	예산안(B)	B-A	전망치(C)	C-B	C-A
109,819	121,097	11,278	125,698	4,601	15,8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2016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 9.4조원을 11.1조원으로 경정하였으나, 13.7조원이 수납되어 2.6조원이 초과수납되는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세수주계를 통하여 실제 수납액과의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4~2016 양도소득세 결산 현황]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본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결산	본예산	추경	결산
69,639	80,474	78,521	104,702	118,561	94,023	110,548	136,833

자료: 기획재정부

(2) 국세물납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세물납주식이 온전히 국세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납주식 매각 등에 따른 손실을 재무결산서 상 주식에 기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참고로, 2015년 매각한 국세물납주식의 물납금액은 1,090억 1,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매각금액은 612억 600만원에 불과하여 물납금액 대비 매각손실률이 43.9%(478억 500만원)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세 물납증권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매각률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자본환원을 결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결산 시부터 물납주식매각 손실액을 재무결산서에 주식으로 기재하였다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는 국세물납주식 매각손실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연례적인 손실을 유발하고 과다한 관리비용을 필요로 하는 현행 국세물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세물납 시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가 적용

되어¹⁾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금액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많다.²⁾ 비상장주식의 경우³⁾ 대다수가 가족 중심적인 중소기업체로서 투자 매력이 부족하며,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를 지닌 특수관계자 외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매입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부의 2016년 국세물납주식 매각 현황을 보면, 획득시점의 장부가치는 2,353억원이며 매각시점의 장부가치는 1,885억원, 실제 매각액은 1,172억원으로서 매각 시 실현된 가치는 획득 시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매각금액이 획득가치보다 작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물납주식 매각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각금액	648	1,603	1,353	78	1,171
장부가치(획득)	1,023	2,497	2,076	76	2,352
장부가치(매각)	963	2,018	1,965	74	1,885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매년 비상장주식 신규 수탁 건수는 30건 정도로 적은 규모이나, 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비용은 매년 약 30억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

즉, 현행 국세물납 제도는 회계 상으로는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 처리되나, 사실상 국가로 하여금 물납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와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구조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은 상속으로 인해 경영권까지 이전된 경우 그 가치까지 반영하여 주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물납주식 중 비상장주식 비율은 2014년 80.1%, 2015년 96.8%, 2016년 65.5% 규모이다.

둘째, 매각시점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손실률이 산정되고 있어 납부시점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세 물납주식의 손실률은 ‘매각시점 장부가치’와 ‘실제 매각금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도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세물납증권 감액손실 인식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어 손실률 계산은 매각시점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획득 후 매각 전까지의 가치변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예컨대, 획득 시에는 가치가 있었으나 향후 폐업·휴업 등으로 장부가치가 0이 되어버린 주식이 손실로 인식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실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각에 따른 손실률은 50.2%이나,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손실률이 37.9%로 감소하게 된다.

[연도별 손실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각시점 장부가치 기준 손실률	32.7	20.6	31.1	△5.4	37.9
납부시점 장부가치 기준 손실률	36.7	35.8	34.8	△2.6	50.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3)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원단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용을 행함에 있어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동 사업은 2015년 결산 심의 시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등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불필요한 연구개발비 전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의 경우 2016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고 2017년 예산편성 시 수요에 맞추어 감액편성 하였다고 조치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에도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2016년 결산 결과 위탁사업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은 재차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집행률은 77.3%이며, 집행부진 사유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일반연구비 등 여러 비목에서 다양한 사유로 나타났다. ① 인건비(기타직보수) 항목에서는 신입 지원단장 선임 지연에 따른 공백(5개월)이 발생하였고, ② 일반수용비 항목에서는 연 4회로 예정되었던 전체회의가 2차례만 개최됨에 따라 회의지원 비용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③ 위탁사업비와 일반연구비 항목에서는 경제 상황,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불용이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주요 예산과목별 2016년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타직보수	311	221	0	90
일반수용비	462	352	0	110
위탁사업비	364	295	0	69
일반연구비	360	223	75	62

자료: 기획재정부

지원단장(1급) 임명이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개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비 예산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비 예산은 지원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은 2016년 뿐 아니라 사업이 신설된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은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3	0	1,002	743	199	-
2014	2,361	2,421	1,989	432	84.2
2015	2,191	2,191	1,580	610	72.1
2016	2,059	2,059	1,592	392	77.3

주: 2013년은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조기 개통에 따른 부작용 발생(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짧은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교부·지출 등 집행기능은 2017.1월 개통하고,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을 포함한 전체기능은 2017.7월 개통할 예정으로, 부처·지자체·민간 사용자 대상 집중교육(2016.11월~), 콜센터 조기운영(2016.12월~) 등을 통해 안정적 개통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두지 않아, 일부 이용자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신규 도입하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을 두어 그 효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도 향후 이용자가 17만명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두지 않고, 2017년 1월부터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조기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없이 조속히 시스템을 개통·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초 일부 이용자들이 시스템 활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조금 미교부 등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e-나라도움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NCAS로 보조금을 교부받던 문화단체에서 e-나라도움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해 보조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스템 활용자는 향후 17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개통 직전인 2016년 12월말까지 23,700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다.

한편, 동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축되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는 동 법안 심의 시 검토의견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조금 수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17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집행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⁴⁾

그러므로 향후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제도 도입 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는 등 신규 정책 또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5) 광역두만강개발프로젝트(GTI) 사업추진 실적 제고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GTI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부진하므로, UNDP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두만강 개발과 관련된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신탁기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UNDP와 지속적으로 협의의 중으로, 광역두만강 지역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4) -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2002286)」, p.4.
“보조사업의 광범위함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 역시 다양한데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조금 수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17회계연도 보조금부터 동 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기간을 두어 보조사업자인 국민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프로젝트 발굴 및 이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발굴 및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GT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4년 UNDP와 9년간 총 540만불 규모의 신탁기금을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매년 60만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납부한 180만불 중 105만불은 선임자문관⁵⁾ 및 자문관⁶⁾의 행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집행되는 사업비 예산은 75만불 규모이다.

UNDP의 프로젝트 발굴 및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출연한 \$75만 중 \$40.4만만 프로젝트 예산으로 배정되어 프로젝트 발굴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또한, <동북아 발전과 송전> 프로젝트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을 보류되는 등 배정된 예산액 40.4만불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16년말 기준 17.3만불 수준으로 프로젝트의 이행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UNDP 신탁기금 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미국 \$)

프로젝트명	사업비	집행액 (2016년 말)	기간	진행상황
두만지역 교통 운송량 전망	60,000	51,000	'14~'15	종 료
정책연구기관간 네트워크	60,000	41,000	'14~'15	종 료 (잔액 반환)
농업협력 프로젝트	69,000	68,000	'14~'16	종 료 (잔액 반환)
동북아 발전과 송전	150,000	-	-	종 료 (잔액 반환)
관세행정 AEO 협력	65,000	13,000	'16~	진행중
합 계	404,000	173,000		

자료: 기획재정부

- 5) 법적 전환, 동북아 수은협약체, 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 등 GTI의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해 사무국장을 보조하여 자문 및 협의기능을 수행하는 직위
6) 무역투자 분과위원회 활동 지원(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등), 상의 연합체 활동 지원, 신탁기금 관리 관련 UNDP와의 업무협의 등 기능 담당

(6)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총사업비 조정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대상 사업들의 집행이 중단되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집행률이 저하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총사업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 되,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자 간 협의 지 연요소를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조정 검토도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고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조치완 료 보고하였으나, 201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사업비 조정절차가 사업을 과도하게 지연시켜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이 원 인이 되어 이월 또는 불용 규모가 당초 계획액 규모의 50% 이상에 달하거나, 계획 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를 50% 이상 감액변경한 사업들은 7개 부처 44개 사업(내 역사업 기준)이며,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 그 규모는 1,161억원에 달한다.

[총사업비 조정 지연에 따라 이월이 과다한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 부처	사업명	당초계획 (A)	계획현액 (B)	집행액	이월액 (C)	C/A	C/B
법무부	전주지검 신축	3,541	3,541	8	3,412	96.4	96.4
	대구교도소 이전신축	5,474	5,474	926	4,546	83.0	83.0
	속초교도소 신축	4,757	5,750	1,949	3,788	79.6	65.9
	기타 청사시설 취득 (전주소녀원 신축)	3,998	3,998	10	3,981	99.6	99.6
	기타 청사시설 취득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신축)	2,237	2,355	124	2,231	99.7	94.7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인천지검 부천지청 별관 신축)	483	483	193	285	59.0	59.0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대전고검 어린이집 독산자기숙사 신축)	86	86	30	50	58.1	58.1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의정부지검 증축)	890	890	45	841	94.5	94.5
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711	1,310	146	1,112	156.4	84.9
	제천수련원 신축	5,000	5,323	671	4,626	92.5	86.9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기타시설 취득 (무안격납고 신축)	1,561	2,172	642	1,530	98.0	70.4
	해양경비안전본부 기타시설 취득 (포항항공대 격납고신축)	261	261	7	231	88.5	88.5
	해양경비안전서 청사취득 (창원해양경비 안전서 신축)	604	604	18	547	90.6	90.6

주: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지연된 사업 중 당초 계획액 대비 이월액 규모가 50% 이상인 사업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총사업비 조정 지연에 따라 불용이 과다한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사업명	당초계획(A)	계획현액(B)	집행액	불용액(C)	C/A	C/B
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신축	2,211	2,211	695	1,516	68.6	68.6
	대구서부경찰서 신축	4,040	4,118	81	4,037	99.9	98.0
	김천경찰서 신축	9,000	9,101	195	8,907	99.0	97.9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순창서)	1,097	1,097	539	558	50.9	50.9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보령서)	216	216	0	216	100.0	100.0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진안서)	793	793	0	793	100.0	100.0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경기항공대 신축)	779	760	61	698	89.6	91.8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경북 315 전경대)	1,511	1,620	1	1,619	107.1	99.9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부산남부못골파출소)	529	529	12	503	95.1	95.1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경산 압량파출소)	414	423	35	388	93.7	91.7
	지구대 파출소 낙도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장성복상치안센터)	357	357	65	276	77.3	77.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시설 취득(남해특공대훈련시설)	2,500	2,183	0	2,183	87.3	100.0
행정자치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1,600	1,600	0	1,600	100.0	100.0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	351	351	0	351	100.0	100.0
	경북지방합동청사 신축	382	382	0	382	100.0	100.0
기획재정부	무안공무원 통합관사	14,422	14,639	0	14,639	101.5	100.0
	부산통합청사	12,758	7,805	3,524	3,473	27.2	44.5

- 주: 1.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지연된 사업 중 당초 계획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50% 이상인 사업임
2. 기획재정부의 부산통합청사는 불용액이 50% 미만이나, 계획 감액변경액과 불용액 합계가 당초 계획대비 66.4%에 달하여 예외적으로 포함하였음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됨

[총사업비 조정 지연에 따라 감액변경 규모가 과다한 사업]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사업명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집행액	(A-B)/A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서울남부지검 별관 신축)	6,023	1,043	477	82.7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마산세무서 청사신축)	1,044	2	511	99.8
	안산세무서 청사신축	4,523	50	129	98.9
경찰청	구미경찰서 신축	2,392	5	127	99.8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마산동부서 신축)	1,674	7	142	99.6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의성서 신축)	186	77	0	58.6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포항북부서 신축)	1,554	4	309	99.7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3,797	1,862	707	51.0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2,758	5	0	99.8
	서울강서경찰서 신축	2,876	6	658	99.8
	서울청 광역수사대신축	2,091	461	459	78.0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 (서울정보안수사대신축)	1,123	11	0	99.0
	순천경찰서 신축	2,363	5	5	99.8
	방배경찰서 신축	1,174	5	0	99.6

주: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지연된 사업 중 당초 계획 대비 감액변경 규모가 50% 이상인 사업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둘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도 행정기록상 총사업비 협의기간이 0~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부처에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을 집행부진 사유(이월, 불용, 사업 감액변경 50% 이상)로 제시하였던 사업은 44개이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있었던 사업은 총 27개로 오히려 더 적으며, 이 중 위 44개 사업에 포함되는 집행부진 사업은 17개에 불과하다.

또한, 제출자료에 따르면 17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간이 0~2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실제 총사업비 조정이 이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면 사업비의 50% 이상이 이월·불용 또는 감액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총사업비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당초 총사업비	요구 월	조정 월	비고
1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63,227	2016.10	2016.10	국회
2	전주지법 신축	113,562	2016.1	2016.3	대법원
3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청사신축	62,193	2016.9	2016.12	법무부
4	전주지검	93,417	2015.11	2016.2	법무부
		85,091	2016.5	2016.10	법무부
5	거창교정시설	74,818	2016.4	2016.10	법무부
6	대구교도소	144,521	2016.1	2016.2	법무부
7	속초교도소	38,410	2016.1	2016.2	법무부
8	원주교도소 이전	107,795	2016.4	2016.9	법무부
9	전주소녀원 신축	30,002	2016.4	2016.9	법무부
10	국세청 마산세무서 청사 신축	24,690	2016.7	2016.9	국세청
		28,554	2016.11	2016.12	국세청
11	국세청 안산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36,213	2016.9	2016.10	국세청
12	구미경찰서 신축	24,822	2016.6	2016.10	경찰청
13	남양주경찰서 신축	42,445	2016.2	2016.5	경찰청
14	남양주북부서 신축	49,607	2015.12	2016.11	경찰청
15	마산동부경찰서 신축	21,669	2016.8	2016.10	경찰청
16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27,674	2015.12	2016.10	경찰청
17	부산해운대경찰서 신축	35,166	2016.8	2016.10	경찰청
18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24,501	2016.2	2016.5	경찰청
19	서울강서경찰서 신축	64,690	2016.8	2016.10	경찰청
20	서울금천경찰서 신축	84,398	2016.6	2016.10	경찰청
21	서울청 광역수사대 신축공사	22,736	2016.2	2016.5	경찰청
22	서울청 보안수사대 신축	20,195	2016.8	2016.10	경찰청
23	제주지방경찰청 신축	38,649	2016.5	2016.10	경찰청
24	충남 태안서 신축	20,716	2016.4	2016.9	경찰청
25	경찰청 제천수련원 신축	26,704	2016.10	2016.10	경찰청
26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	91,528	2016.4	2016.5	기획재정부
		89,384	2016.10	2016.10	기획재정부
27	정부전산백업센터 신축	116,770	2016.4	2016.7	행정자치부

주: 음영처리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이월, 불용, 감액변경 50%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7) 민간협력차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의 효과성 분석(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민간협력차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지원대상 및 분야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협력차관사업은 개도국 정부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직접 차관을 공여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15년 사업예산 30억원이 전액 불용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앞 온렌딩 방식의 민간협력차관(30억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민간협력차관을 제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동 사업의 2016년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2016년부터 금융 ODA 지원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당초 민간협력차관을 도입한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

민간협력차관은 개도국 정부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직접 용자를 하는 것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민간의 수요 및 용자의 적합성을 직접 심사함으로써 투명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기존의 대정부 차관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동 사업 신규추진 당시 동 사업의 특수한 목적은 개도국 현지 소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ODA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적합한 사업 수요를 찾지 못하여 2015년 예산을 전액 불용하게 되자, 2016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국민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자금을 용자하고, 동 법인에서 현지 서민금융기관을 전대차주로 정하여 캄보디아 서민 대상 저리대출을 실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⁷⁾

7) 사업 수요 발굴이 지연되면서 2016년 민간협력차관 사업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였고, 우리 기업에 자금을 용자하는 금융 전대차관 방식은 현지실사 등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2016년 민간협력사업진행컨설팅 사업예산도 전액 불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대차관 형식의 금융 ODA 지원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1인당 평균 \$1,000) 사업이므로, 개도국 민간영역에서 효과성 있는 ODA 프로젝트를 우리 측이 직접 선별하고자 하는 민간협력차관 도입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DA 프로젝트를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등 사업의 특수한 목적과도 관련성이 낮다.

둘째, 현행과 같은 소규모 차관 지원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효과 및 우리나라 ODA 인지도 제고 성과가 미흡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금융 전대차관 ODA 방식을 선제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JICA는 몽골에 50억엔, 프랑스의 AFD는 남아공에 1.2억 유로를 기업 및 산업 발전 용도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30억원으로서 동 사업의 최종수혜자는 약 2,000명으로 집계되며, 평균 대출금액은 약 \$1,00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통해 개도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ODA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개선 필요(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제개발금융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국제개발금융기구앞차관 사업은 개도국 정부에 직접 차관을 공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차관을 공여하여 이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지원방식으로, 2015년 계획액 11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풍부한 자원, 높은 경제성장 등으로 경험잠재력 및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지역 개발은행(CAF⁸⁾, CABEI⁹⁾)과 차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8) 안데스개발공사(Corporacion Andina de Fomento)

9)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etegration)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동 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한 ODA의 비구속적인 성격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하여 2016년에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2015년 동 사업 신규추진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1,000만의 차관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FAD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양자 간 협정 체결 없이 낙관적인 기대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결과, 집행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2016년에는 CAF, CABEI 등 남아메리카의 다른 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제개발금융기구들이 우리 측 차관을 공여 받는데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우리기업의 수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속성 원조”를 선호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제개발금융기구들은 제공받은 차관을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비구속성 원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규모 측면에서도 국제개발금융기구들이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희망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로 지원되는 협조융자 형태를 선호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향후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은 반복적인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목표 초과달성 등에 대한 원인분석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부적절한 성과관리 사례로 지적된 사업은 국가계약제도지원, 조세정책지원, 경제협력강화지원 등이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횟수를 4회로 변경하였다며 해당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적사항 중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사업 추진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과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물가관리 사업은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소비자물가조사를 지원하는 10억원 규모의 소액 사업이나, 성과지표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로 설정하고 있다. 소규모 조사활동이 생활물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므로, 이는 비현실적인 지표 설정 사례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사업은 2억원 규모의 소액 사업으로서 회의비용 및 연구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과목표는 국가의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세입재원 확보, 지출구조조정 등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 추진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사업의 본질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가 있었다.

연구개발예산편성지원 사업은 정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여 R&D 투자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나, 성과지표는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횟수”로 설정되어 있다. 단순히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틀로 활용하려는 것인데, 성과지표는 “공개토론회 참여자 수”로 설정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 수가 많다고 하여 양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사례라 할 것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¹⁰⁾은 “대개도국차관 집행액”, 즉 단순한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부족하다.

10) 예산코드: 일반회계 3331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수 부처의 국유재산 취득사업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보면, 개별 부처가 각각 소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① 국세청·외교부·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다수 부처는 신축사업의 성과지표를 ‘공정률(=사업비 누적집행액/총사업비)’로 설정하고 있으나, ② 대법원·경찰청·고용노동부·기상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해연도 예산집행률’로 설정하고 있고, ③ 대통령경호실과 해양수산부는 아예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에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을 측정하는 경우(대법원·기상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예산액 기준 집행률을 측정하는 경우(경찰청·고용노동부)가 혼재되어 체계의 일관성이 없다.

이처럼 하나의 기금 내에 편성되어 있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성과를 각기 다른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통일된 성과관리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집행액/예산현액)¹¹⁾’과 ‘공정률’을 동시에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1) 건설사업은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액 기준이 아닌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예컨대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100억원은 전액 이월한 경우,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50%로 나타나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으나,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왜곡된다.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사례]

구 분	사업명	성과지표	산출근거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과목표 설정	소비자물가관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통계청 발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GDP x 100
사업의 본질과 관계없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연구개발예산편 성지원	R&D 정책자문팀 회의 개최 수(회)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횟수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	공개토론회 참여자 수(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 시 주요 분야별 참석자 수
	대개도국차관	대개도국 차관 집행액	2016년 대개도국 차관 집행액 합계
성과관리 체계의 통일성 부족	국유재산관리 기금 일반	공정률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예산집행률	당해연도 예산액 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기타	청사시설 취득 개소 수 등

자료: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작됨

(10)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부과고지서의 우편발송에 대한 반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전 주소변경지를 파악하여 변경주소로 송달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최신 주소지로 세적 정비를 실시하고, 반송률이 높은 납세자 명단을 추출하여 휴·폐업 여부, 송달장소, 사업장소 제지, 납세관리인 등의 세적을 정비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 반송비율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세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16년 종이발송된 납세고지서 990만 5,839건의 17.4%인 172만 176건의 고지서가 반송되어 최근 5년 간 반송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고지서 우편 발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체 발송건수 ¹⁾	반송건수	반송률
2012	7,951,142	922,234	11.6
2013	8,311,618	995,205	12.0
2014	8,560,732	1,087,904	12.7
2015	8,631,849	1,340,932	15.6
2016	9,905,839	1,720,176	17.4

주: 1.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 외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건수 포함

2. 종이우편 고지서 발송건수(최초발송 + 재발송 포함), 전자고지 건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취인 부재로 반송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6년 반송된 172만 176건의 우편물 중 33.9%인 58만 3,264건만이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이며, 주소불명·수취인불명에 따른 반송이 36.8%에 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우편물 반송사유별 반송 현황]

(단위: 건, %)

반송사유	건수	비율	비고
수취인불명	360,070	20.9	
주소불명	274,283	15.9	
수취인 부재	583,264	33.9	
기타	502,559	29.2	수취거절, 배달누락 등
합 계	1,720,176	100.0	

자료: 국세청

반송비율의 증가는 재발송을 위한 이중비용을 초래¹²⁾할 뿐만 아니라 부과고지서의 적시송달 실패는 「국세기본법」 제12조¹³⁾에 따른 송달의 효력 발생을 어렵게 하는 등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재 시 송달방법 등을 개선하고, 송달 주소를 정비하는 등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11) 가산금 수납률 제고 필요(관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체납관세 및 가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산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 및 보전압류를 강화하여 체납 관세 및 가산금 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체납관세 및 가산금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관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 가산금 수납률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등 관세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16년 가산금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9.2%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2년 9.3%에서 2016년 1.6%로 크게 감소하였다. 미수납액은 2012년 332억 5,300만원에서 2016년 3,033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45억 5,500만원이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었다.

12) 2016년 고지서 등 등기우편물의 1통 당 단가는 1,930원이며,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의 1통 당 단가는 300원이다.

1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산금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2	4,914	49,717	4,637	9.3	33,253	11,827
2013	4,774	104,897	4,561	4.3	96,511	3,825
2014	4,944	167,190	4,494	2.7	162,171	525
2015	5,019	242,562	9,048	3.7	233,483	31
2016	4,719	313,083	5,155	1.6	303,373	4,555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통관 후 적발되어 추징할 때, 이미 무채산이거나 폐업한 경우가 많아 체납이 발생하고, 체납 가산금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징수결정액에 포함됨으로 인해 미납 가산금이 매년 증가하여 수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세청은 가산금 수납률 개선 대책으로 보전압류 강화,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체납특성을 고려한 체납관리조직 개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수납 실적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가산금 수납률 저조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여 납세의식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

(12) 컨테이너 검색기의 적극적 활용 필요(관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컨테이너 검색률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고가의 컨테이너검색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대테러·수요집중기 컨테이너화물 검색 강화, 우범화물 타겟팅 등 전략적 검색강화로 컨테이너검색기의 활용률을 제고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 컨테이너 검색률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관세청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컨테이너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트럭이 검색장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이다.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컨테이너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컨테이너검색기의 적극적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5년 간 컨테이너 반입량 추이]

(단위: 천개)

	2012	2013	2014	2015	2016
컨테이너 반입량	2,957	3,066	3,280	3,322	3,501

자료: 관세청

그러나 고가¹⁴⁾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검색률이 1.8%에 불과하여 검색률이 매우 저조하다.

14) 컨테이너 검색기의 대당 가격은 최소 26억원에서 최대 106억원이다.

[컨테이너 검색률 추이]

(단위: 건, %)

세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검색수	검색률
부산(5)	26,103	1.4	27,258	1.5	25,407	1.4	26,740	1.4	27,999	1.4	29,358	1.5
인천(3)	15,495	2.3	16,906	2.5	17,544	2.4	17,345	2.2	19,384	2.4	18,678	2.1
평택(2)	5,597	3.4	5,775	3.3	5,029	2.9	6,323	3.5	11,324	6.1	10,353	5.1
광양(1)	1,367	0.6	1,569	0.6	1,654	0.6	1,893	0.6	1,979	0.6	2,459	0.7
군산(1)	459	1.9	539	3.3	594	4.4	599	5.4	574	6.0	652	5.3
울산(1)	371	1.1	386	1.1	602	1.7	606	2.5	632	2.7	739	3.0
합계	49,392	1.7	52,433	1.8	50,830	1.7	53,506	1.6	61,892	1.9	62,239	1.8

주: 1. 괄호안은 컨테이너검색기 수

2. 부산 세관은 2013년 하반기 신규 컨테이너 검색기 1기가 도입되어, 2013년부터 5기로 운용

3. 서울세관 도라산에 있는 컨테이너검색기는 남북출입 적재화물 검사가 주목적이므로 나머지 13대와 달리 운영하지 않고 있음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컨테이너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검색률을 제고하는 것은 제한된 컨테이너 검색 장비와 인력을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목적이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적발 뿐만 아니라 억제·예방인 것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기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 평택 세관의 경우 컨테이너 검색 건수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검색기를 가동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시간으로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군산과 울산 세관의 경우 컨테이너검색기 당 하루 평균 3건 미만의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데 불과하여 컨테이너검색기의 활용률이 특히 저조한 상황임으로 적극적 활용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만일 컨테이너 검색률의 일률적 제고가 어렵다면 세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관별 컨테이너 검색 현황]

(단위: 대, 건, 시간)

세관	컨테이너검색기 수	하루 평균 검색 수	하루 평균 검색 시간
부산	5	23.5	5.9
인천	3	24.9	6.2
평택	2	20.7	5.2
광양	1	9.8	2.5
군산	1	2.6	0.7
울산	1	2.9	0.7
합계	13	19.2	4.8

주: 1. 서울세관 도라산에 있는 컨테이너검색기는 남북출입 적재화물 검사가 주목적이므로 나머지 13대와 달리 운영하지 않고 있음

2. 컨테이너검색기 당 250일을 가동했다고 가정

3. 관세청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임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13) 시설비 낙찰차액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절(조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시설비 낙찰차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성 예산 계획을 최대한 조기에 수립하여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조달청의 조치결과에도 2016년 역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시설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불용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청의 경우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을 위한 예산액 1억 3,7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을 집행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2,100만원을 사용하여 당초 계획하지 않은 ‘제안서평가실 A/V 시스템 설치’, ‘청사 환경개선공사’, ‘비상계단 가이드램프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배수로 사면보강공사’ 사업을 위한 예산액 2,9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700만원을 사용하여 ‘직원 후생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강원지방청의 경우에도 ‘주차장 차양 및 파고라 지붕재 교체공사’를 위한 예산액 2,000만원 중 5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500만원을 사용하여 ‘급수용 가압펌프교체공사’,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사 벽지 및 장판교체’ 사업의 낙찰차액 100만원을 사용하여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추진하였다.

[2016년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공사내역	예산액	지출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내역	금액
부산 지방청	화물용승강기 교체	137	116	제안서평가실 A/V시스템 설치	11
				청사 환경개선공사	8
				비상계단 가이드램프 설치	2
	배수로 사면보강	29	22	직원 후생복지시설 설치	7
강원 지방청	주차장 차양 및 파고라 지붕재 교체	20	5	급수용가압펌프교체	3
				청사 냉난방기 설치	12
	관사 벽지 및 장판교체	4	3	청사 냉난방기 설치	1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절차 없이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방만한 운용을 억제하려는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 조달청은 향후 시설비 낙찰차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8건, 부대의견 중 2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나라장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강구’ 등 6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소득분배지표 개선 필요’ 등 4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기획재정부]			
1	정부는 구조적·저성장 기조에 대응하여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내실화 하도록 한다(부대의견)	개선방안 시행 중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능력 확충을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부분 구조개혁과 산업·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겠음
2	정부는 국회 증액사업을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수시배정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에 지정사유 및 집행현황 등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부대의견)	개선방안 시행 중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 중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정사유 해소시 즉시 배정 조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개별사업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 지정사유 및 집행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3	기획재정부는 통계청과 국세청 간 자료 협조 등을 통한 소득분배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자료(국세청 등)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임
4	기획재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환경·문화재 경관문제 등 선행조건이 우선 해결되면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5	기획재정부는 소규모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할 것을 검토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실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면서, 통합관리 등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조달청]			
6	조달청은 나라장터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 방안 시행 중	2017년 6월 나라장터 안전입찰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는 기능 개선을 실시하였고, 나라장터 전면개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2017.4~7월) 중이며, 나라장터 전면개편을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3년 장기:487억원)과 상품정보시스템 재건축 사업(2018년 21억)을 신청하여 기재부 심의 예정임
7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이용률 제고 및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동 지표를 관리할 것.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 기능 강화 등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개선 방안 시행 중	2017년 하도급지킴이 만족도 조사 시행(2017.6~7월)하고, 이용률 제고 및 이용자 편의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할 계획임. 또한,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중임
[통계청]			
8	통계청은 인터넷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설문지 및 조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통계청은 물가, 소득 통계 등의 조사 결과 및 활용에서 국민 체감도와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인터넷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모바일기기를 통한 조사방법 도입,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등 반영 예정임.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과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1인 가구 및 고령자가구 등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물가 보조지표를 개발할 계획(2017.11월)임
9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산출된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 등 통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지출중심 조사로 전환 실시(2017.1월)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및 복지부 기초연금자료 등 행정자료 입수검토 및 적용기준을 마련 중이며, 2017년말 행정자료로 보완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서 소득통계 및 관련지표들을 공표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0	통계청은 대한민국 통계가 나아갈 방 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국가통계 발전 로드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중(2017.10월 완료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7 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95건으로 시정 23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5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77건이며, 조치중은 18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적정 편성 미흡’ 등 4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미래창조과학부	12	17	38	67	54	13
방송통신위원회	5	3	13	21	17	4
원자력안전위원회	6	0	1	7	6	1
합 계	23	20	52	95	77	1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미래창조과학부	1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1
합계	2	1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적정 편성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2015년 자체수입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227억원 증가하여 결산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진 것에 대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 규모를 정확히 계상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 조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결산을 토대로 2016년 자체수입 규모를 당초대비 총 804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결산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2017년 예산 요구시 주요 사업비를 828억원 감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5개 출연연구기관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액이 1,074억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결산잉여금이 1,012억원 발생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출연연구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자체수입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산잉여금을 최소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 예산 대비 초과 수입액은 2015년 29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결산잉여금도 2015년 855억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출연 연구기관	수입계획 (A)	수입결산 (B)	B-A	(B-A)/A	결산잉여금
2014	25	4,293,569	4,375,351	81,782	1.9	124,043
2015	25	4,643,539	4,646,491	2,952	0.1	85,496
2016	25	4,900,633	5,007,994	107,361	2.2	101,159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액이 증가할 경우 당초 계획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한다. 이는 출연연구기관 관련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일으킨다. 출연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미래창조과학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인건비의 현실화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을 통하여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말이음센터에 대하여 중계사 인건비를 유사기관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중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통신중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예산에 중계사의 월 근로보수 3.3% 인상과 중계사 3명 증원을 반영하였으며, 매월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수화기법 및 친절응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 인건비 수준은 유사 기관 중계사 인건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는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실시간 소통을 제공해주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와 경기도가 운영하는 TRS센터 등이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이들 3개 기관의 중계사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화통역센터는 19.4%, TRS센터는 8.7%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기관의 중계사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

	센터명	중계사 1인당 인건비	손말이음센터 대비
미래창조과학부	손말이음센터	2,107	100.0
서울시	수화통역센터	2,516	119.4
경기도	TRS센터	2,290	108.7

주: 기본급 기준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중계사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손말이음센터가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중계사에게 낮은 보수를 제공함에 따라 이직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중계서비스의 품질이 하락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미래창조과학부)는 손말이음센터에 종사하는 중계사의 인건비를 유사기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다편성 시정 미흡(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예상 자금운용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자금운용수익률을 예측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시장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시 적용하는 예상 자금운용수익률을 2016년 4.6%에서 2017년에는 4.19%로 변경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예산 편성시 적용한 자금운용수익률과 최근 자금운용수익률의 차이를 감안할 때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 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3년 이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자금운용수익률은 예산 편성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자금운용수익률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2014년 0.48%p에서 2016년에는 1.89%p로 확대되었다.

[자금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 %p)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A)	4.53	4.30	4.70	4.60	4.19
결산 (B)	3.93	3.82	3.32	2.71	0.00
(A-B)	0.60	0.48	1.38	1.89	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예산상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자금운용수익률(4.19%)은 2015년 결산 대비 0.87%p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예산안 편성시 2015년 자금운용수익률은 확인 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안 편성시 자금운용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위탁연구과제 수의계약 조건의 강화 필요(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이라 한다)이 협약금액 5,000만원 이상인 위탁연구개발과제를 지정협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위탁연구개발 추진시 원칙적으로 경쟁방법에 따르고 지정협약 등 경쟁제한적 방법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6년 9월에 내부규정인 「위탁연구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5,000만원 이상인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지정협약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¹⁾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위탁연구 관리지침」은 위탁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완화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³⁾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위탁연구 관리지침」에서 지정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추정가격 뿐 아니라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지 여부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 1) 「위탁연구 관리지침」 제4조 ② 위탁연구를 지정과제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위탁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7. <생략>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8건, 부대의견 중 1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등 5건이며,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무선마이크 이용자 지원 강화’ 등 2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유사·중복사업 개선 필요’ 등 8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의 과제선정 기준 개선 필요’ 등 4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舊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운용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가칭 ‘지능정보·방송 융합촉진기금’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개편 관련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여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2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2016.7.18, 강효상의원 대표 발의)되어 있음
3	징수불능 불납액의 결손처리 근거마련 등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징수·채납자 관리 등을 효율화하는 개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결손처분 근거마련을 위하여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법무부 정부발의)의 조속한 법개정 재추진을 요청함
4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면허대역 무선기기 이용자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6년 기금변경을 통해 무선마이크 정비 관련 예산을 확보(6억원→29억)하여 정비 인력 확충 및 홍보 강화 진행 중이며, 2018년까지 700MHz 무선마이크 정비 완료를 위해 2018년 예산 확보(22억원)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증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5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유관기관 등의 보안관계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의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액과 예산편성을 연계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방통위 등 유관기관 보안관계 서비스 회의 개최 및 기관별 의견 청취(2016.10월~11월)하여, 위탁비용 징수방안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별 징수액을 통보 하였고, 2018년도 기재부 예산편성 시 징수액 대비 예산 감액요청 중임
6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사·중복 R&D사업을 통폐합 조정하는 R&D혁신방안을 강구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행해 나갈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정부R&D혁신방안(2016.5월)에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R&D사업 예산편성 시 5~10% 자체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장기·관행화 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일몰사업을 지정(2018년 16개, 2019년 2개)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을 종료토록 하였고,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유사·중복성 확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음
7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ODA 성격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파악·검토하여, 공식 ODA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은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의 공식절차에 따르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미래부 소관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 대학의 자체 수행 중인 ODA 성격의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2016.9월)함. 또한, 담당 부서(연구기관지원팀, 미래인재양성과)에서 조사하여 2018년에 추진할 사업리스트를 제출토록 요청(공문시행: 8.25)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검토하여 ODA성격으로 2018년에 관리하려는 사업은 3개 기관, 4개 사업(2016년 433백만원)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7.6월)의 중복성·필요성 등 심사를 통해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KIST·표준연·광주과기원 등 3개 기관 3개 사업(1.9억원)이 반영됨
8	융합연구사업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융합연구단사업 추진 시 참여 기업의 부담금 비율을 제고하고 각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인력 운영 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책임평가제도 도입 및 사업관리교육, 매칭재원 분할납부 허용, 연구자 파견 예외조항 마련, 참여기업 부담금의 공동관리규정 준용 등 융합연구사업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9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비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수행 조직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을 전담조직 또는 각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개선 방안 시행 중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사업비의 지속적 확대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이고, 안전관리비 계상비율 미준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 과태료 조항 신설 추진 중이며, 출연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총괄관리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계획임
10	주요사업을 통하여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간 과도한 연구수당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3월 세계김치연구소에 연구수당 제도개선방안(연구수당 풀링제)을 시범 도입하였고, 시범도입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 적용할 예정임
11	미래창조과학부는 격차해소기술개발 사업이 보다 취약계층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기준을 사업목적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2017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기획 진행 중이며, 2017년 신규 과제 중 격차해소분야 과제 선정 시 보다 취약계층에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겠음
12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서 연구로 건설허가가 사업의 전제조건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발생이자와 연구수당의 집행을 개선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취득(~2017년말)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규제기관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지진에 대한 부지 지진 안정성 평가 용역을 수행 중(2017.4~8월)이며,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원안위 건설허가 취득(2017.9월~)할 예정임. 또한, 발생 이자는 동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연구수당은 사업실적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기 조치(2016.9협약, 2015년 17% → 2016년 7%)함
13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입자가속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자력학원의 분담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적정성 재검토’(2016.8~, 기재부, KISTEP)를 통해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업정상화의 핵심사항인 의학원 분담금 확보를 위해 전국병원 대상 참여병원 공모 추진(2016.12~2017.2)하여, 서울대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17.2.28)하여 협상 진행 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증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4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과태료 의 업무체계 및 벌칙 등 관련 제도 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불법스팸 과태료 업무체계 일원화 등을 위해 정책협의체(미래부, 중앙 전파관리소 등)를 구성·운영(2016.8 월~)중이며, 2017.7월 중 회의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 추진 중임. 과태료 징수불능채권 해소를 위한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 2016.11월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며, 2017.7월 중 재협 의 등 지속적인 협의 추진 예정임
15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건축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체계를 개편하 며, 규제 기능의 소관 및 법적근거 문제를 해소하고, 행사 경비, 집기비 품 사용 관련 예산 낭비 요인을 시 정할 것(시정)	법령 개정 필요	2017.2월 직제 개정을 통해 재단의 정책·연구기능 등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편 완료하였고, 조달청 내용연수 규정을 준수하여 집기비품 관리 중이 며, 행사 경비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행 중임. 향후 2017년 9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중장 기 구축방안 수립할 예정이고, 규제 기능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16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TV에서 프 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며, 국제방송교 류재단 운영비에 대한 효율적인 지 원방안을 강구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현실적으로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별 시청률 조사가 어려 운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표본지 역 및 표본 수를 확대하였음. 또한, 2016년 상반기 방송통신발전기금 실 적을 제출받아 사업 수행상황을 점 검하여 문자방송에 사용한 금액을 반환조치하고, 보조금법상 제재부가 금을 부과하였으며, 목적과 다른 용 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담당자를 내 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그리 고 2018년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예 산으로 프로그램 제작비(178억 5,000 만원)만을 요구하였고, 향후 프로그 램 제작비 이외의 운영비 항목에 대 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문체부 등 관 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증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7	방송통신위원회는 Wi-Fi AP DB 구축기술 개선을 통해 실내외 위치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의 구축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위치정보의 정확도 제고 및 실내외 위치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유관기관(ETRI, KISA)과 개선된 Wi-Fi 신호 정보의 수집 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 추진 중임
[원자력안전위원회]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 포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 콘텐츠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정보공개센터포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반응형웹 개발(2017.3~9), 포털이용안내 라이빙톤 온라인 블로그 및 SNS확산, 포스터 제작 및 배포인증 이벤트 실시, 맞춤형 카드뉴스 제공 등 포털 홍보 강화(2017.5~12)
1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다수호기 원전이 밀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부대의견)	개선방안 시행 중	원안위는 2016년 3월부터 다수기 PSA분야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2016.12)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다수기 PSA 평가 규제기술 개발에 착수(2017.6)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246건으로 시정 51건, 주의 62건, 제도개선 134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223건이며, 조치중 23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3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이전용 최소화 필요’ 등 6건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5	36	88	(0)	129	117	12
문화체육관광부	37	22	34	(0)	93	83	10
문화재청	9	4	12	(1)	25	23	1
합계	51	62	134	(1)	246	223	2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3	3	0
합계	3	3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이전용 최소화 필요(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부서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각 실·국별 기본경비가 규모에 맞게 편성·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6년에는 실국 기본경비의 실수요 적정수준을 검토하여 실국 기본경비를 본예산에 사전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집행률 제고 및 이·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를 과다 편성 후 타 실국 기본경비로 이전용하고 있는 바, 매년 집행수준을 고려하여 기본경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의 2013년~2016년까지 본예산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47.5%~66.8%로 매년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를 편성한 후 각 실국에 배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3	2,970	2,970	233	△1,281	1,922	1,473	49.6	76.6	410	39
2014	2,769	2,769	409	△1,082	2,096	1,851	66.8	88.3	143	101
2015	3,626	3,626	143	△1,453	2,316	1,725	47.5	74.4	572	19
2016	2,894	2,894	572	△1,336	2,159	1,929	66.7	89.3	217	14

자료: 교육부

(2)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과다(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6년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예산집행 관리 강화 및 계속비제도, 예비결산제도 운용을 통해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이월액은 3.9조, 불용액은 1.8조로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에 따라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¹⁾되어 일 시적으로 2015년 이월·불용액이 증가(예산현액 62조 중 이월액은 3.7조, 불용액은 1.7조)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 65.7조 중 이월액은 3.9조, 불용액은 1.8조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계속비제도 및 예비결산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통해 관행적인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연도 2.28 → 회계연도 12.31

(3) 한국장학재단 집행수준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7년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 편성 시 2015년 결산(2,031억 1,900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 대비 172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16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집행률은 69.9%로 연례적 집행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바, 집행수준을 고려한 적정수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043억 5,900만원의 69.9%인 1,42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5억 2,200만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3	221,522	221,522	221,522	24,571	11.1	11.1	196,951
2014	191,425	191,425	191,425	161,425	84.3	84.3	30,000
2015	335,326	335,326	335,326	274,899	82.0	82.0	60,427
2016	204,359	204,359	204,359	142,837	69.9	69.9	61,522

자료: 교육부

교육부가 조치한 바와 같이 2017년 예산액 중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1,982 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²⁾ 2016년 집행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도한 불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5 결산 (A)	'16 예산 (B)	'17 정부안 (C)	증 감	
				'15결산 대비 (C-A)	'16예산 대비 (C-B)
□ 한국장학재단 출연	274,899	204,359	251,580	△23,319	47,221
○ 학자금 대출 지원	203,119	215,479	198,199	△4,920	△17,280
- ICL 대납이자	136,947	176,737	173,093	36,146	△3,644
- ICL 군이자면제	7,818	6,911	6,352	△1,466	△559
- 일반 군이자면제	2,518	3,410	2,278	△240	△1,132
- 일반 손실보전금	33,602	658	1,883	△31,719	1,225
- 일반 이차보전	15,203	21,255	8,796	△6,407	△12,459
- 일반 특별상환유예	7,031	6,508	5,797	△1,234	△711
○ 고유사업비	34,765	37,944	38,276	3,511	332
○ 재단운영비	40,507	39,160	40,960	453	1,800
○ 지방이전	9,693	2,012	760	△8,933	△1,252
○ 자체수입	△13,185	△90,236	△26,615	△13,430	63,621

자료: 교육부

(4)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하여 기금소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12억 2,200만원 증액된 82억 2,200만원 확보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전체 출연금 예산의 증액은 자체수입의 예산 편성 감소(636억원) 등에 따른 것임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근본적인 재정안정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 중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의 소진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기금별 수입내역]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역신문 발전기금	융자 이자수입	1	1	0	0	0
	여유자금 이자수입	1	5	2	2	1
	경상이전수입	4	2	2	2	3
	융자원금회수	29	15	9	2	0
	정부내부수입	0	0	50	100	70
	여유자금회수	228	156	70	28	27
	소 계	263	179	133	134	1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금의 여유자금 현황: 2012~2016년]

(단위: 억원)

	기금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예술회 계	지역신문발전기금	194	116	28	35	16
	소 계	5,228	5,134	4,392	3,857	3,289

주: 평균잔액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기금 자체의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예산 확보 단계에서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하여 정부외의 출연금 등 사전에 규모가 확정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의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 201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및 추진사업 집행점검 실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여전히 대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2016년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1,423억원의 이월액과 43억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52.0%에 그친다. 또한 실집행단계에서의 이월액은 2014년 1,161억 4,000만원, 2015년 1,388억 5,700만원, 2016년도 1,423억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2016년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대구광역시	8,549	8,549	8,549	8,549	3,782	12,331	1,907	10,424	0	15.5
경상북도	165,797	165,797	158,141	158,141	135,075	293,216	157,034	131,876	4,306	53.6
합 계	174,346	174,346	166,690	166,690	138,857	305,547	158,941	142,300	4,306	5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자체의 실집행을 독려하여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문화재 보수정비의 사업의 실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문화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문화재 보수정비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보수정비사업 지원 기준을 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문화재 보수정비의 실집행률이 전년대비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회는 2013년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16년도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050억원 중 이월액이 1,164억 4,000만원에 달하고 불용액은 42억 5,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0.4%에 그쳐 전년과 거의 같고,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교부액)	시·도 지자체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2	200,200	139,040	58,990	2,170	69.5
2013	243,000	150,685	89,688	2,627	62.0
2014	233,800	140,669	90,432	2,699	60.2
2015	280,000	168,042	106,962	4,996	60.0
2016	305,000	184,310	116,438	4,252	60.4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 제고대책’은 2015년 6월 마련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실집행 실적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3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상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요건의 확대’ 등 6건이며,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시 근거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대학 중심 지원 필요’ 등 3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의 근본 방안 마련’ 등 4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보완 필요 등’ 등 9건이며,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항은 ‘국가브랜드 사업 보완 추진’ 1건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교육부]			
1	교육부는 법률에서 정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과도하게 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인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상 요건을 확대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임
2	교육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사전 재난예방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중임
3	교육부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 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관련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2017.3.10)하였으며, 2018년 예산편성 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4	교육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바, 국회, 시도교육감,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추진 중임
5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6.7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추진방향(시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2017.4~12월)가 종료되는 2017년 12월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6	교육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한시적 조직인 아닌 고정된 전문부서에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6월 1일부터 한시조직이 아닌 교육과정정책관 소속 동북아교육대책팀에서 동 사업 운영 중임
7	교육부는 해외한국학연구 추진과 관련하여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해외한국학연구 추진 관련 질적 성과지표인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만족도’ 지표를 추가하여 성과지표를 보완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8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적용 대상 학생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여건을 개선할 것. 교육부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관리 할 것.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포함하는 등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실무능력 강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 및 관련 매뉴얼 개발·보급을 완료(2017.6.1.)함. 또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유니테크)과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사업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 중이며, 유니테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기술사관은 2017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여 2020년 사업 종료 예정임
9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가진 대학 및 사업비 부담 집행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성확보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보완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2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가진 대학 및 사업비 부담 집행 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 중단, 부담 집행 사업비 감액 등 제재수단을 강화 할 수 있도록 2017년 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함. 또한, 2017년 5~6월에 대교협 주관으로 공정성 검증 가이드라인 개선안 및 고교정보 공통양식(시안)을 마련하여 고교·대학 의견수렴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개선안 확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공통양식 적용 예정임
10	교육부는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지표의 경우 하위대학 판정요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조건을 정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내실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주기(2016~2019년) 인증제가 이미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3주기 인증기준 마련 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하겠음
11	교육부는 성인지결산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 설정, 성과 목표 및 달성 기준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제2차 성인 문해능력조사(~2017년 12월)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적절한 설정과 성평등을 고려한 내실있는 예·결산서를 작성할 예정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2	교육부는 K-MOOC 및 KOCW 사업의 유사·중복을 감안하여 분리되어 있는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KOCW는 KMOOC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 중에 있고, KOCW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기반의 고등교육 지원체제를 중장기 발전 모델로 삼아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2017년 11월 완료), 이에 기초한 KOCW 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 예정임. 또한, 양 서비스의 차별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하여 양 기관간 수시협의를 교육부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추진중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13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작품의 중소기업 기술료 차등 징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법률에 차등 징수의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법률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2017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
14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5,000만원 미만의 지원작품 기술료 면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면제하려면 법률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법률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2017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
15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지원을 받은 포맷 파일럿이 시장에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포맷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지원을 받은 포맷 바이블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하므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법률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2017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
16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용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작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료 차등 징수와 5,000만원 미만 지원작품의 기술료 면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법률자문,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 2017년 하반기 완료 예정)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7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목적에 맞게 국고가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회계·기금 간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술자료원 등 통합기관 예산을 문예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예결위 심의에 회부되었으나 '논의 안함'으로 최종 반영되지 못함.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
18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사업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여 취소하던지, 아니면 미술산업의 발전 및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미술 특구를 새롭게 조성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바코와 토지사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토지 소유주인 코바코와 토지사용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견사항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으로 문체부에서 연수원 시설 전체 대관을 제시(2016~2017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이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음
19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전국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전반적인 실태조사(2016년 11월~2017년 8월, 문광연)와 함께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용역이 끝나는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0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경기장 및 개폐회식장의 관리주체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활용도 제고를 통해 사후 관리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사후활용 주체인 강원도와 협력하여 국내외 대회 개최, 국가대표 훈련 지원, 학교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장 활용수요 창출 여건을 조성·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 중임
21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사업비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기재부 및 지자체와 사업비 문제를 협의 중이며 협이가 완료 되는대로 총사업비(규모, 기간 등) 변경 절차를 거쳐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2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고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발현할 수 있도록 'Creative Korea'의 장기적인 국가브랜드의 방향을 모색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로고디자인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독창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살려 수정·보완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조치 불가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는 2016년 표절논란 등 여러 논란으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시정 요구사항인 “국가브랜드 슬로건 'Creative Korea'의 장기적인 방향 모색과 로고디자인 수정·보완” 차원으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reative Korea'의 사용 중단 및 관련 사업의 종료를 결정함 (2017.6.29, 보도자료 배포)
[문화재청]			
23	문화재청은 2009년 확정 고시된 대구·경북,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관철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국무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이 확정될 경우 생태 제방안, 유로변경안 등은 중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울산시가 최적으로 제출한 '생태제방' 설치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재상정검토 예정(2017.07.20.)이고, 문화재위원회 결과에 따라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구미시, 대구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간 지속적인 협의 추진 예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8. 외교통일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72건으로 시정 8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45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69건이며, 조치중 3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전략사업비의 적정 규모 편성 및 별도 사업으로 분리 필요’ 등 2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2	13	15	30	30	0
통일부	4	4	24	32	29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2	6	10	10	0
합계	8	19	45	72	69	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전략사업비의 적정 규모 편성 및 별도 사업으로 분리 필요(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전략사업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고, ODA 사업예산은 사업목적이 상이한 외교부 일반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며,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2017년 전략사업비 예산으로 2016년 220억원 대비 20억원 감액한 2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전략사업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2016년 예산의 경우 전

략사업비를 외교부 일반사업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2016년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66.0%인 점을 고려할 때 전략사업비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사업비의 2016년도 집행률은 66.0%이다. 이는 전략사업비 편성 첫 해인 2014년도의 50.7%나, 2015년의 45.4%에 비해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낮은 수치이다.

더욱이 전략사업비는 ‘프로젝트 사업’, ‘국제기구 사업’, ‘긴급구호 지원’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지원되는데, 이 중 프로젝트 사업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는 11건의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6건, 2016년에는 ‘코리아에이드’와 ‘키르기즈공화국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업’의 2건만이 선정되었다.

[전략사업비 중 프로젝트 사업의 연도별 지원 현황]

년도	사업명	비고
2014	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사업(2014~2017/800만불)	11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빈민가정 상수급수연결사업(2014~2016/300만불)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2014~2016/950만불)	
	키르기즈스탄 선거역량배양사업(2014~2016/500만불)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건립사업(2014~2016/560만불)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2020/1,455만불)	
	필리핀 비사야스 주립대 톨로사 캠퍼스 재건사업(2014~2016/400만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2014~2017/950만불)	
	우간다 중합석유화학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2014~2016/150만불)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2014~2016/300만불)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2014~2016/300만불)	

년도	사업명	비고
2015	필리핀 복구 일로일로 3개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2015~2017/800만불)	6건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2015~2017/480만불)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사업(2015~2017/600만불)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2015~2017/500만불)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2015~2018/800만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현대화 타당성조사 사업(2015~2017/400만불)	
2016	동아프리카 3국 Korea Aid(2016/280만불)/유지 관리(2016/159.5만불)	2건
	키르기스공화국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2016~2018/746만불)	

자료: KOICA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둘째, 20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략사업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협의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2014년부터 전략사업비는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략사업비가 아프리카 지역의 ODA 사업만을 위해 편성·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세부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하여 집행하지 않는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에 있을 경우, ODA의 지역별 집행 규모 산정 등에 있어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사업 형식인데, 이와 추진 방식 및 집행 절차에서 상이한 전략사업비를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도 결산의 시정요구로 전략사업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도 예산에도 전략사업비가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사업 진전 미흡(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의 2015년도 집행률이 0.9%에 불과하고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착수율(%)’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하고 사업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16년도에는 남북관계 진전가능성에 대비하고 남북합의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조치완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성과지표를 개선하였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성과지표 역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 한 취지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성과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성과지표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착수율(%)’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회)’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변경한 성과지표 역시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변경 전·후의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 대동소이한데, 변경 전에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30%)+공원조성을 위한 북한 및 UN사 협의 4회(30%)+공원조성 관련 관계부처 회의 10회(20%)+공원조성 관련 민간 의견수렴 10회(20%)’ 였으나, 변경 후에는 ‘북한·UN사 제의 및 협의(1회)+국제사회 사업설명 등 지지 확산(2회)+관계기관 회의(2회)+민간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5회)’로 개편되었다.

[변경 전과 후의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 비교]

	변경 전(2015년도)	변경 후(2016년도)	비고
성과지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착수율(%)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회)	산출 형식 변경 (백분율→횟수)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공원 조성계획 수립(30%)	-	삭제
	공원조성을 위한 북한 및 UN사 협의 4회(30%)	북한·UN사 제의 및 협의(1회)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목표 횟수 축소
	공원조성 관련 관계부처 회의 10회(20%)	관계기관 회의(2회)	
	공원조성 관련 민간 의견수렴 10회(20%)	민간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5회)	
	-	국제사회 사업설명 등 지지 확산(2회)	신규 추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변경된 성과지표에 따라 작성된 성과 달성도는 120으로, 이는 2016년도의 성과 목표가 10회였으나 실적은 12회로 초과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도 이월된 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사업 진행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성과가 초과 달성되었다고 측정된 것은 성과 지표의 개선이 단순한 변경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미비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4	30,200	0	30,200	234	0.8	0.8	308	29,658
2015	32,400	308	32,708	299	0.9	0.9	63	32,346
2016	30,000	63	30,063	60	0.2	0.2	0	30,003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16년도의 성과지표 개선이 적절한 조치로 시정이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2016년도 사업 추진 상의 진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것으로 측정된 점을 볼 때 여전히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3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통일관 운영 개선’ 1건이며,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교역경협보험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2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통일부]			
1	통일부는 지역통일관 관리운영주체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과 전시물을 일관되게 홍보 전시하며, 운영과 관한 일정부분 운영비를 부담하여 지역통일관의 운영을 주도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통일관의 명확한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임(2017년 7월 현재)
2	통일부는 교역경협보험이 사회적 갈등 및 보상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6.12월 이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향과 개선안 및 추가 소요재원 등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총 12회 TF실무회의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음.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교역·경협보험 관련 규정(경협보험취급 기준, 교역보험취급 기준, 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약관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임
3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제도 개선)	대책 수립 중	금강산관광 중단 후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대출(3회 251사, 817억원),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457개사, 52억원),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2016.8.25) 등 정책적 지원대책을 추진하였고, 고성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회의(2016.7.6, 7.28) 및 현장방문(2016.7.8, 9.9, 10.22~23) 등을 통해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신규통일관 조성 및 전시 콘텐츠 지원(1억원), 금강산전망대 한시 개방(2016.10월 2주간, 620명 방문),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10억) 등을 시행하였음. 앞으로도 기업과 고성군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국방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01건으로 변상 1건, 징계 1건, 시정 10건, 주의 47건, 제도개선 47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조치완료 86건,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다.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연례적인 정원 대비 인력초과 운용 해결 필요’ 등 4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0	0	8	26	22	(3)	53	44	9
방위사업청	0	0	1	17	13	(0)	31	27	4
병무청	1	1	1	4	12	(2)	17	15	2
합계	1	1	10	47	47	(5)	101	86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연례적인 정원 대비 인력초과 운용 해결 필요(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위관급 장교가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초과 운용되고 있으므로, 위관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부사관 정원 및 현원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소위의 정원 대비 초과운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획득 인원을 축소하였고, 부사관의 경우도 근속진급에 따른 중사의 정원 대비 초과운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사 인원수를 감안하여 중사 정원을 산출하는 등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관급 장교가 정원 대비 초과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16년 국방부의 위관급 장교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군의 중위·소위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 운용되고 있으며,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현원이 10명 이상 초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 2016년도 인력운용률(정원 대비 현원) 현황]

(단위: %)

계급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대 위	99.9	94.9	98.0	101.6
중·소위	100.1	116.1	111.2	101.2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대위 부족운영 및 중·소위 초과운영은 해군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균형 있게 충원하여 2020년까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¹⁾ 따라서 인력초과 운용에 대한 문제가 향후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해군을 제외한 각군은 2017년 중·소위 임관인원을 축소하여 2017년까지 중·소위 초과인력을 해소할 계획이다.

(2) 건강보험부담금 급증에 따른 군 의료체계 조속한 개편 필요(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당초 편성액 대비 232억 4,800만원을 초과하는 565억 9,100만원이 집행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군 의료와 민간의료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심층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이·전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34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215억 5,600만원의 예산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여 집행하였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집행액	민간병원 이용 현황(건)
2013년	30,770	203	30,973	1,025,851
2014년	33,589	0	33,589	1,310,097
2015년	33,343	23,248	56,591	1,168,173
2016년	34,922	21,556	56,478	1,414,360

자료: 국방부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급증에 따라 타 사업에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관련 연구가 종료되는대로 심층분석을 통해 군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부는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는 한편, 현역병이 민간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군 병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장비보강 및 의료진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방위사업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4년에 방위사업청이 정리유예 중인 해외채권이 51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고, 상사 중재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채무자들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을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Hackenco 및 GMB사를 상대로 한 상사중재 판정에서 국가가 승소했으나 법인재산이 없어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소송 및 상사중재가 진행 중인 BAE사, Raytheon사, Havelsan사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추심 및 강제이행 청구 등으로 채권 회수 조치예정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방위사업청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위사업청의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2,118억 7,400만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898억 1,400만원으로 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40.8%인 1,995억 9,700만원이 수납되었고, 2,902억 1,700만원은 미수납되어 2015년 미수납액 2,787억 5,800만원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수납 사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 1,485억 5,300만원, 소송 및 상사중재 등에 의한 정리유예 1,369억 3,900만원, 납기 미도래 47억 2,500만원이다.

특히, 해외채권이 전체 미수납액의 68.2%인 1,979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정리유예 채권이 1,006억 4,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및 상사중재 진행 중에 재산을 은닉하여 추후에 방위사업청이 승소하고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확대 부적정(병무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수요를 확대(2,701명 증원)하고,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인원도 확대(5,000명)하여 편입률을 제고하였다며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2016년 4만명인 보충역 자원이 2019년 5만 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병무청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인원 등을 증가 시켰음에도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 대상자로 판정되는 인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보충역 자원 현황]

(단위: 만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충역 대상자(A)	6.0	6.5	8.5	9.8	10.7	11.2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등(B)	3.8	3.6	4.5	4.8	5.1	5.3
보충역 자원(A-B)	2.2	2.9	4.0	5.0	5.6	5.9

주: 2017년부터는 예상인원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보충역 대상자가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조속히 소집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병역처분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보충역 처분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국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31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군배상금 불용액을 군공항 소음방지 사업에 활용할 필요’ 등 3건이며,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역 당직근무수당 인상 필요’ 1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사관학교 입학시험 우선선발 전형 합격기준 개선 등’ 등 9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급증에 따른 군 의료체계 개편 필요’ 등 2건이며, 수사·재판 중이어서 미조치 중인 사항은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료 과다 지급’ 1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국방부]			
1	국방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군 배상금 불용액을 군공항 소음방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군 소음대책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인 「군 소음 대책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음배상금 불용액을 군 공항 소음방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군 소음대책사업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국방부는 군인 수당 체계를 고려하여 당직근무비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조정 필요	2017년 예산안 국회 예결위 심의시 당직근무비 5,000원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미반영되었고, 기획재정부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시 현역 당직근무비 인상에 대해 지속 협의할 예정임
3	육군사관학교는 공동출제위원, 출제수당 지급 등 생도 선발 관련 내용에 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출제위원 후보인력풀과 외부검토위원을 확대운영하며, 외부출제위원 선발방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 등으로 개선할 것. 육군사관학교는 내부출	개선방안 시행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개정(‘17.6월)을 통해 수당지급 법령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교육청) 및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최대한 많은(2~3배수) 인력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또한, 내부출제위원의 경우 학교별 문제 출제 가능한 교수가 한정되어 있으나, 과목별 동일 교수가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제위원이 반복 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2차 시험성적 외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이 결정되도록 우선선발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2년 연속 반복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2차 시험에 1차시험, 내신 성적 등 객관적 평가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음
4	국방부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국방부는 과학화훈련 체계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연구 개발 가능성, 획득방식 결정,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을 검증하는 선행연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주의 및 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7월부터 총 사업비 300억원(시설사업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계획임
5	국방부는 위원회 평가 및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을 지양하고,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주요홍보사업(‘장병사랑 캠페인’)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일반입찰을 의뢰하여 입찰기간 준수하였고, 업체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위원 5명 모두 입찰업체가 소속된 학회의 임원 등을 배제하고, 국민소통전문가단 및 정부부처 홍보전문가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제고함
6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13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 수익률 제고 및 수익성이 낮은 기금보유 부동산(대전 문화동 토지) 매각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7	국방부 및 공군은 재이월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시설개선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업체에 과오 지급된 부당이득을 반환시킬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부터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선금금 과오정산(미회수액) 관련 시공업체에 대한 법정대응(민사 소송 제기) 진행 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8	국방부는 질 좋은 방상내피를 개발하여 장병들이 사비로 방상내피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방한복 상의류(방상 내·외피) 품질개선사업 추진(기간/금액: '14. 6월 ~ '17. 6월(3년) / 약 13억원) 중이며, 향후 개선 방상내·외피 규격개정을 완료('17.8월)하고, 2018년 개선 방상내·외피 보급을 완료할 예정임
9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1월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 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함께 군 의료와 민간의료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연구(~2017.9월)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군 의료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영역과 민간부문과 협력할 영역을 식별하여 개선할 예정임
10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부대의견)	대책 수립 중	구상권 철회시 제주민·군복합항 반대단체(주민)의 진상규명 및 사과, 국가보상 요구 등 예상되는 문제점 고려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면·복권 문제는 관련 법률(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소관사항임
[방위사업청]			
11	방위사업청은 과제선정과정을 재검점하여 신규과제 선정 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규과제 발굴노력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ACTD 과제선정 대상 및 선정방식 개선, 단계화 개발을 통한 소요와의 연계성 확대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0월까지 방위사업관리규정 훈령을 개정할 예정임
12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시 민수품의 수출보다는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이전 받도록 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절충교역 가치 중 수출관련 방산비율을 50%이상 할당하도록 절충교역 지침 개정 추진 중(2017년 하반기)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3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는 시험 평가 시 공정한 시험평가체계를 확립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항공기항재민GPS체계 사업은 2017년 5월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8월 계약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 민간전문가가 합참 시험평가위원회와 통합시험평가팀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시행예정임.
14	방위사업청은 적절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항공기별로 사업추진기 본전략을 신중히 수립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16. 5월) 및 적정 총사업비 확보를 통해 F-15K 용을 제외한 11개 기종 항재민GPS 체계를 분리계약 추진함으로써 전체 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함. 향후 2017년 8월까지 11개 기종 항재민GPS체계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까지 F-15K 항재민GPS체계 총사업비 협의·계약을 완료할 예정임
[병무청]			
15	병무청은 위탁검사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등 병무청의 종합심리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병무청 종합심리검사 강화를 위해 군복무 부적합·부적응 관련 영역 확대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 개발(KIDA)하여 '1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적용하고 있음. 또한, 병무청 자체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임상심리사 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임
16	병무청은 과다 지급된 임차료와 관리비를 환수하고, 계약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교육센터 임차계약 담당자를 징계하고, 그 담당자 및 건물주에 대하여 수사의뢰 조치를 할 것(변상 및 징계)	기타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임차계약 담당자강등처분('16.5.1.)하였으나 소청제 기하여 정직3월로 변경('16.8.24.)되었고, 임차계약 담당자와 건물주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관한 국가소송(민사소송) 제기 등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행정안전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271건으로 시정 68건, 주의 87건, 제도개선 117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247건이며, 조치중 24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등 5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	8	3	(0)	25	24	1
국민안전처	13	30	25	(0)	68	64	4
행정자치부	2	37	51	(0)	90	84	6
인사혁신처	0	7	21	(0)	28	28	0
경찰청	39	5	17	(1)	60	47	13
합계	68	87	117	(1)	271	247	2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舊행정자치부 / 現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가시책특별교부세 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2016년부터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차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전면공개(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한 일부 국가·지방 정책협력 사업들은 사업선정 및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과 관련되어 ‘정부3.0 거점 지자체 발굴·육성’(14억원),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30억원) 등을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였다. 정부3.0 거점지자체 발굴·육성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부3.0 서비스 알림관 설치와 지자체간 협업관련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3.0 맞춤형서비스 확산 사업은 지자체의 국민디자인과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3.0 서비스 알림관과 맞춤형서비스 확산은 정부3.0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홍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정부3.0 변화관리 지원’사업의 내역으로 집행하였는데, 별도로 특별교부세로도 정부3.0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16억원), ‘골목경제활성화’(15억원) 등은 총사업비의 50% 정도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방비 부담방식의 사업추진은 국고보조사업의 수행방식으로서, 지방재원인 지방교부세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31억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한 내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간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간판교체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교부하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교부세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관련되어 국회심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평가결과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보통교부세 감액재원의 규모와 용도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 필요(舊행정자치부 / 現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보통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 목적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교부세 감액재원은 자치단체의 재원 보전에 충당하거나, 건전한 재정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보다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른 재정보전에 50% 이상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향후 감액 인센티브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자치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건전 재정운용 촉진재원은 규모와 용도가 법령상에 명문화·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의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이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대회’,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으로 각각 139억원과 150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다. 2016년에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42개 지자체에게 83억원이,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38개 지자체에게 31억원이, '재정분석 우수단체'로 5개 지자체에 19억원이 지급되어 총 133억원이 지급되었다.

[연도별 건전재정운용 촉진재원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개)

연도	건전재정운용 촉진 재원 사용 내역	지자체 지급액	자치단체수
2014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체납액 축소	13,905	109
2015	예산집행률 제고,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세체납액 축소	15,000	134
2016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재정분석 우수단체 지방공기업 혁신	13,300	63

자료: 행정자치부

[2016년 건전재정운용 촉진 재원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공기업 혁신			재정분석 우수	계
	소계	세출절감 우수	세입증대 우수	벤처마케팅 분야	기타	소계	공기업 구조개혁	상하수도 경영개선		
배정액	8,300	2,900	3,100	1,400	900	3,100	1,450	1,650	1,900	13,300
지자체수	42	15	15	6	6	38	12	26	5	85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은 법령위반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은 감액재원을 미감액 지자체의 재원보전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²⁾ 그러나 현행 법령상 감액재원의 규모나 건전한 재정운동을

- 1)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⑥법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촉진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행정안전부(舊 행정자치부)는 감액재원을 건전 재정운영 촉진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도 및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통합관리 필요(인사혁신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각 부처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들의 복무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자체 국제기구고용휴직자 성과관리 강화(2017.1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실시 강화하였고,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선발절차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인사혁신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9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부담금을 편성하여 국제기구 신탁기금 출연,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이와 연계된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동일 국제기구의 국제부담금이 부처 예산과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관련 국제부담금을 인사혁신처 예산에 일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19개 중앙부처는 소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63개를 운영하였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휴직자의 인건비가 해당 부처의 사업예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위한 국제부담금이 인사혁신처가 아닌 각 부처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한다.

또한 동일한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하면서도 관련 인건비성 국제부담금을 부처 사업예산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지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9명의 공무원이 고용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국제부담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예산과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둘째,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달리 「공무원임용규칙」상 고용휴직자 선발, 복무관리, 성과평가, 직위존치 평가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으로 근무하면서 복무관리와 성과평가의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전부처 혹은 유관부처 대상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채용되고, 휴직기간 중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가 재외공관과 외교부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되고, 휴직이 종료된 후 근무성과·국제기구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반면,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5절에 의하면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소속장관이 시행하는 자체 공모를 통해 선발되거나 공무원이 직접 국제기구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되고,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평가결과, 업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 성과 및 업무실적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일관성 있고 엄정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 존치여부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상·하반기에 국제기구 고용휴직 교체직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해당 직위의 유지, 전환, 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이하 ‘직위실효성 검토’).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52개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에 대한 ‘직위실

효성 검토결과 해당 직위의 성과가 미흡하여 고용휴직 직위를 폐지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는 직위가 유지(직위 변경 포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³⁾

[연도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단위: 개)

연도	국제기구 고용휴직 교체직위		직위실효성 검토 결과
	대상 직위수	대상 국제기구	
2013	11	CBD, IAEA, FAO(3), IBRD, ILO, ITC, OECD, UPU, WIPO	11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4	6	OECD(4), WHO, WMO	6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5	17	FAO, ILO(2), IMO, ITU, OECD(7), UNESCO(2), UNWOMEN, WHO, WIPI	17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2016	상반기 7	IBRD(2), UNCCD, UNEP, UPU, WHO, WMO	6개 직위 직위유지 1개 직위 폐지(IBRD)
	하반기 11	OECD(2), AfDB, IFAD, UNESCO, WHO, IDB, IFC, FAO, IAEA, WIPO	11개 직위 모두 직위유지 (1개 직위 직위변경)
합계	52		51개 직위 직위유지, 1개 직위 감축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직위에 대한 존치여부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직위 실효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국제기구의 업무수행 평가가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직위 존치평가의 평가설계가 엄밀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직위존치평가 평가항목 내역]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역(정성평가)
주요 업무 실적	프로젝트/보고서/회의출장발표 등/소속부처 보고/본국 업무협조/국제기구 평가
국익기여도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 반영 등 국익 기여도
향후 계획	국제기구 협력사업 일정, 계획 등
직위유지 필요성	타 직위와의 유사중복성 등

자료: 인사혁신처

3) 2016년 IBRD의 1개 직위가 폐지(감축)되었고, WHO/WPRO의 1개 직위는 변경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면서 사업 담당 직위가 총괄 담당 직위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직위 존치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주요 업무실적, 국익기여도, 향후 계획, 직위유지 필요성으로 설정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직위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소속부처 보고, 본국 업무협조가 주요 업무실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계획에는 본국 소속 부처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일정 등이 반영됨으로써 소속 부처가 직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가 관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위 존치평가가 직위 유지나 폐지(감축)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과태료·가산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舊국민안전처/ 現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민안전처의 2015년도 과태료와 가산금의 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23.8%, 4.0%로 저조하므로, 징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과태료 등 미수납액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는 징수관리체계 수립 및 채권관리 점검 정례화, 채권 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연장가입 조치, 전문 변호사 초빙 일선 채권회수 절차 법률검토·점검 등 채권 회수율 증대를 위한 징수관리체계 강화를 마련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민안전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각각 34.2%, 12.9%로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징수 관리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채권관리 점검 정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2016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연도별 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률]

(단위: 백만원, %)

연도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13	169	139	82.2	21	4	19.0
2014	105	65	61.9	25	5	20.0
2015	470	112	23.8	25	1	4.0
2016	483	165	34.2	31	4	12.9

자료: 국민안전처

따라서 행정안전부(舊국민안전처)는 추가적인 징수관리체계 강화조치를 마련하여 과태료·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감축을 위한 대책 강화 필요(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에 경찰대 졸업자 120명 중 18.3%에 해당하는 22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현행 교육비환수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경찰청은 현행 입학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입학사정 단계부터 경찰로서의 소명의식이 투철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탈피하여 경찰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인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면접 단계에서부터 구축하고자 면접시험제도를 개선하였고 경찰조직에 맞는 인재선발을 위해 기존의 PAI인성검사, PMAT검사를 2017년부터 경찰청이 개발한 ‘경찰 채용 인·적성검사’로 변경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경찰대학 면접시험 개선 및 인·적성검사방법 변경만으로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이행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찰대학 면접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인·적성 검사 변경을 통해 경찰대 졸업후 의무복무를 위한 재직의지·소명의식 등을 확인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

으로 의무복무 미이행자 감축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경찰대학의 경찰법학과는 종전 법학과와 유사하고 경찰대학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에 유리한 점이 있다.

경찰청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4)에서 정하는 대상자 선발기준 외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2조5)는 ‘위탁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들 중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무성적이 없는 경찰대학 졸업생을 위탁교육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대학 졸업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실시 제도는 경찰간부 양성을 위한 경찰대학 설치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근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경찰대학 졸업후 의무복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경찰대학 졸업자 대학원 위탁교육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 추진한 선발제도 변경만으로는 경찰대학 의무복무 미이행자 감축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4)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으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건강·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5)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2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탁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중이 아닌 자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4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상 근거없는 특별정려금 지급 개선 필요’ 등 5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과목구조에 부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등 4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헬기 기종 단순화 방안 검토 및 야간 운항능력 제고 필요’ 등 12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필요’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선거에서 특별정려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명시할 것(법령 개정)	법령 개정 필요	특별정려금 지급을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2018년도 하반기까지)
[舊국민안전처 / 現행정안전부]			
2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 사업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제1항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비보조율 향상은 국가재정,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3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늘리는 등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각각의 온실보험 사업이 차별화되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제고를 위해 언론매체 및 전단지(TV 453회, 라디오 45호, 신문 2종, 포스터 및 전단지 170,000매)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온실보험 사업 차별화를 위해 계절형 상품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4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단계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완료(총사업비 확정)되면 사업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舊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5	국민안전처는 해경 헬기의 다기종 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종 단순화 방안 검토 및 주·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헬기 배치 등 운용 체제 재점검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매년 1~2대씩 일반경쟁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 때문에 다기종이 된 것으로, 한해에 여러대를 일괄 계약하여 기종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향후 노후헬기 대체 등 헬기 추가도입으로 주·야간운항 가능 항공대 확대 할 예정임
[舊행정자치부 / 現행정안전부]			
6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부 내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적절한 입법 형식에 대해 고려할 것(주의)	법령 개정 필요	적극적 지방이양 및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일괄입법 추진과 동시에 부처에 개별적인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개정현황을 지속 점검중임
7	행정자치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사업의 결과를 기준으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분석·진단사업 결과를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주의 단체의 지정·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2016.10.20.)
8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예산과목구조를 기능조정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부내 조직개편에 따라 '18년도부터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역발전프로그램으로 이관 조치 하겠음
9	행정자치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과정에서 연례적인 공공요금 예산의 부족에 따른 조정 반복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주의)	예산 조정 필요	자체 절감노력과 함께 매년 예산편성 시 물가상승률분 등을 적절히 고려해 동 예산(2018년도 공공요금 예산요구액: 34,653백만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0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전자정부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주요 포털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사업의 범위를 복지·고용·창업·교육 등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에 행정자치부 소관 3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연계한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구축하였으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7.7.26. 공식개통 할 예정임. 향후 2017~2019년에 걸쳐 타 기관의 주요 서비스 총 260종 및 정책정보 사이트 97개를 연계해 나가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 중임
11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관련 통계를 시·군·구 단위로 정확하게 수집·작성·공개하고, 이를 통해 성과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도 「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국비 636백만원, 지방비 635백만원)하였고, 2018년부터는 실시간 인사통계 산출 가능함
[경찰청]			
12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새정부 공약으로 ‘광역자치경찰 도입 전국 확대’를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임
13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시정)	예산 조정 필요	중앙학교 청사건물이 30년이 경과되어 기존 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은 건축물 구조 문제로 시행 곤란하므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교육생 생활실(현재 8인 1실)을 2인 1실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4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경찰의 보수를公安직과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공안직 수준 보수 조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및 구체적 조정 방안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임
15	경찰청은 현행 일반대학원 위탁교육훈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위탁교육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탁교육훈련자들이 특정대학과 특정학과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위탁교육자의 복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위탁교육성과를 관리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경찰대학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찰대학 졸업생 대상 위탁교육’을 2019년부터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또한, 다양한 치안 분야로의 전공 확대·다변화를 위해 경찰 관련 전문학과를 우선 선발하고 학과별 선발인원을 제한(최대2명)하였으며,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학과성적 배점 40% → 35%로 하향, 면접 30% → 35%로 상향) 하였음
16	경찰청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필요 시 세부과제 수행기간동안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이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청의 R&D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과제의 연구 목표 등을 고려, 차년도협약시(17년 7월)부터 사업단 및 도로교통공단의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청 R&D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를 국립치안과학원으로 확대·개편을 추진함
17	경찰청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결과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흐름 개선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연구」 용역(17. 5. 16~10. 13)을 수행 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8	경찰청은 신입순경교육 수요가 정상화되면 중앙경찰학교의 초과현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 정원 180명에 현원 242명으로 62명 초과현원 운영으로 2015년대비 15명 감축하였으며, 2017년 7월현재 정원 180명에 현원 214명으로 34명 초과현원 운영으로 2016년 대비 28명(약 54%) 감축하였음
19	경찰청은 SNS 등을 통한 정책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민생치안 현안 등과 관련된 사회 각계각층의 글을 공모·게시하는 등 대국민 소통취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17. 5월 다양한 경력자와 연령대로 구성된 블로그기자단 9기(23명) 선발을 완료하였고, 향후 현장체험 및 정책설명회를 활성화하여 기자단의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대국민 소통취지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	경찰청은 살수차 분사 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살수차에 거리측정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거리측정기 등 살수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계적 보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입찰전 검토 중임
21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찰병원의 이용자수 감소,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다인실 위주 병상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경찰병원 중기사업 재원배분 효율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각도에서 지속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고, 이용자수 증가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 중임. 또한, 적정진료관리실 신설 등 병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6년부터 경찰병원은 다인실 병실 위주 구조에서 탈피하고, 공공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정책에 부합하고자 간호간병통합 병실 운영(기존 73병동, 4인실 24병상)을 확대할 계획(현재 72병동 공사)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22	경찰청은 국민들이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일시정지위반에 대한 범칙금만을 개별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범칙금 상향방안을 검토 중이고, 범칙금 상향 전까지 ‘일시정지’ 규정의 준수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실시 중임
23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의 여경용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여경용 편의시설을 확대하겠음
24	경찰청은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안전처(해경 및 소방)와 협의하여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17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위험직 공무원(경찰·소방·해경)의 정신건강사업 통합·운영 방안 검토 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82건으로 시정 48건, 주의 42건, 제도개선 97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69건이며, 조치중 13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국내 반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개선 필요’ 등 6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13	11	50	(2)	72	67	5
해양수산부	31	23	24	(2)	76	69	7
농촌진흥청	1	4	13	(0)	18	18	0
산림청	3	4	10	(1)	16	15	1
합계	48	42	97	(5)	182	169	1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해양수산부	1	0	1
합계	1	0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국내 반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개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 곡물의 국내반입량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시 사업계획 및 담보제공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통형 해외곡물사업 관련 2개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곡물 반입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점 진출지역(연해주)에 정책지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는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고, 2016년 선정된 기업도 생산량의 0.07%인 207톤만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곡물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 확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곡물의 국내 반입량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완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경우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기업의 총 생산량은 24억 4,734톤인 반면, 이 중 2억 2,174톤만이 국내에 반입되어 생산량 대비 국내반입율은 9%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2016년 지원된 2개 기업의 상황도 27억 7,952톤의 생산량 중 0.07%인 207톤만이 국내에 반입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의 마련을 통해 국내 반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재해대책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금리인하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농정예산이 실제규모에 비해 부풀리게 보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비 예산을 축소 편성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또한 과도한 불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비 융자금 이자율(1.5%)을 시중금리에 준하여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예산 편성시 결산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1,092억원) 보다 낮은 수준(1,085억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금리인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는 당초 편성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38.2%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과다한 수준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비 예산을 축소 편성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실적 대비 과다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사업 시행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의 예산 100억 원을 AI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의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였고, 보조사업 예산 178억 6,600만원은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부족재원으로 집행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의 금리로 융자되고 있어,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과도한 불용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재해대책비 융자금 이자율(1.5%)을 시중금리에 준하여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1.5%의 이자율로 융자되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판매장개설 지원 사업 존치 여부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판매장개설 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부족과 과다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을 축소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7월 전문유통업체 및 개인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매장의 신규 개설뿐만 아니라 확장에도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 바,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결과는 2016년 시행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 사업은 2013년 이후 지원 실적이 전무하며, 2016년 사업 시행 결과도 마찬가지로 융자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액 14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인 판매장개설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2016.7)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행지침의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¹⁾한다. 따라서 2013

년 이후 동 사업을 통해 설치된 판매장이 없고, 시행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목적 외 사용(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재해대책비를 세월호참사 배·보상금 산정 용역,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인천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총 33억 9,400만원)한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금지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 정한 세출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해대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의 당초 목적인 재해피해의 경감, 재해 복구 및 어가지원 등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에도 재해대책비를 재해대책과 무관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분향소 운영비에 사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 예산을 2016년에도 재해대책과 무관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분향소 운영비²⁾에 34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재해대책비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³⁾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자연재해가 아닌 세월호참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향소 운영비에 재해대책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1)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2건의 사업 신청이 있었으나, 담보 부족 등으로 실제 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2) 인천 일반인 추모관(4,700만원),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32억 2,100만원), 진도군(1억 6,400만원)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제45조⁴⁾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 위배된다.

세월호참사는 2014년도에 발생하였고 그 후에 분향소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재해대책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사업의 재이월금지 원칙 위반(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지자체 보조사업을 실집행함에 있어 2016년 5월 말 기준, 재재이월(2013년 교부) 91억 1,700만원, 4회계연도 이월(2012년 교부) 48억 2,800만원 등 총 불용액 139억 4,500만원 발생한 것은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제48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및 「예산 집행지침」을 미준수한 것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실제 집행 시 부당하게 이월된 보조금 및 이자수입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의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반환조치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보조사업비로 이월된 보조금(139억 4,500만원) 및 이자수입(38백만원)은 전액 세입조치 완료(16.7.1) 하였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서귀포크루즈항 건설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제 집행 시 「국가재정법」의 재이월 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6억 중 5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2016년도의 이월액 91억 2,600만원 중 재이월액은 45억 8,000만원이었다.

4)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제48조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외에는 재이월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는 이 같은 보조금 집행의 경우, 그 일부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적정한 국가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 그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반납조치 되어야 할 보조금이 재이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방제정건조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舊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도 방제정건조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액 규모가 26억 5,400만원(예산현액 36억 6,000만원 대비 72.5%)에 달하므로 방제정 건조 진척 상황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수행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는 집행실적 매월 점검, 기술인력 추가투입, 조선소 자체 T/F 구성, 대금지급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민안전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도 방제정건조 사업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6%인 80억 5,000만원으로서 효과적인 공정관리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방제정건조 사업의 집행부진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동 사업의 집행률은 44.7%로 부진하며 이월액은 80억 5,000만원으로 국민안전처의 공정관리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방제정건조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3	3,900	3,900	801	△895	3,806	3,128	82.2	677	1
2014	325	325	677	0	1,002	693	69.2	305	4
2015	3,425	3,425	305	△70	3,660	829	22.7	2,654	177
2016	1,170	12,490	2,655	△400	14,745	6,595	44.7	8,050	100

자료: 국민안전처

[방제정건조 사업의 기능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내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학방제정 1척(신규) '15년~	3,500	3,500	427	0	3,927	427	3,500	0
화학방제정 1척(신규) '16년~	500	500	0	0	500	0	500	0
유류방제정 1척(대체) '14년~	3,160	3,160	1,578	0	4,738	3,576	1,130	32
유류방제정 2척(신규) '15년~	4,550	4,550	650	△400	4,800	1,856	2,880	64
유류방제정 4척 대체(3), 신규(1), '16년~	0	780	0	0	780	736	40	4
계	11,710	12,490	2,655	△400	14,745	6,595	8,050	100

자료: 국민안전처

동 사업의 기능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방제정 건조사업의 2016년 본예산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유류방제정 건조사업은 전체 7척 중 2016년 추경사업인 4척의 착수금 집행액 7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2014~15년 추진된 3척의 이월액은 40억원으로, 방제정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

국민안전처는 방제정 건조사업이 3년차로 진행되는데, 1년차 사업이 지연되면 연차적인 이월이 발생하게 되며, 2015년부터 추진된 화학방제정 건조 사업이 국내 최초 도입에 따른 설계 장기화로 2년차 사업까지 연쇄이월되었고, 유류방제정 1척 대체 3년차 사업은 조선소의 파업으로 방제정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

나 유류방제정은 기존에도 계속 건조되어 온 함정으로서 집행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 2011년 추진된 유류방제정(방제7호)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변경·모형실험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계속해서 이월되어 당초 건조시기보다 1년 늦어진 사례가 있으며, 반복적인 집행부진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⁵⁾

한편, 국민안전처(現는 해양경찰청)는 방제정 건조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년차 계획으로 건조되는 방제정의 예산은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의 비율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를 집행실적에 맞추어 1, 2년차의 편성비율을 줄이고 3년차의 편성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방제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되므로 수주업체의 초기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부 공정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비율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2014년 상임위 및 2015년 예결위에서는 방제정 건조사업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4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업경영체 관리 강화 필요’ 등 3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및 국고지원비율 조정 필요’ 등 4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수산물과학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 시 경쟁절차 도입’ 1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공동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6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농림축산식품부]			
1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주여건이 불리하고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소득보전이라는 직불금 취지에 맞게 조건불리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밭농업직불금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비율의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여·야·정 합의(2015.11.30)에 따른 단계적 지급단가 인상 및 '18년 예산안 편성시 국고비율 상향 추진중임
2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공동자원화율 제고를 위해 해당 설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지역개발사업 등 해당 설치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3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지규모에 따라 정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농지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하고, 농업인연금제도 등 고령농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검토하며,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 인상 등 밭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고령농 지원 강화 및 밭농업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등은 이행 중,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선안 검토 추진, 농지연금 지속 개선, 밭직불지급 단가 연차별 인상 추진, 직불제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2017.6)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확충(SOC) 사업의 환경문제 및 낮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생활하수, 축산분뇨 등 점오염과 농약, 비료 등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미질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조성 중인 간척농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담수호를 공업용수 등으로 개발하거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서산A지구 담수호(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과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17.4월), 향후 상호 협의를 통해 상류와 호내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2018년)
5	농협중앙회는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 배당 수입을 제고하는 등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합배당, 사업관리비 등 지출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향후 농협의 방안 마련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임
[해양수산부]			
6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부 확인을 통해 영어조합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할 것.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 해양수산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계속 근무 중인 민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및 지적사항 반영을 위해 2017년 9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어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위법·부당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조사 실시('16.12월 완료)와 어업법인 등록 및 운영여부 현장 실태조사를('16.8.2)하였음. 또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통보·점검·교육을 실시하였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7	수산물 수매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2017년 9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
8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에 대한 조사·평가를 원칙적으 로 의무화하고, 평가대상,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것. 해양수산부는 전문성을 갖춘 별 도의 기구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의 효과를 상시적으로 조사·평가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하여 갯녹음 피해 면적 감소율 등을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 조사·평 가 의무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이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후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 조 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평가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임. 또한, 바다숲 조성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 하였 으며, 2018년 성과계획서에 반영 할 예정임
9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계획액을 증액할 것, 해양수산부는 연령에 맞는 홍보 정책을 수립하여 어업인에게 정부 정책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지난 3년간 집행부진으로 인해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으로 계획 액 증액이 불가하였으나, 재정당 국과 계획액 증액을 위해 지속 협 의 중임. 또한, 금년부터 보도자 료 등 언론홍보 외에도 어촌 현 장, 행정관청 등 어업인의 출입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 배포처를 확대하 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활용 등 홍보 방식의 다변화를 추 진하고 있음
10	정부는 신종 쿠도아의 인체 유해성 에 대한 연구, 예방 및 구제재 마련,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결론 도출 이 전의 어민 피해 방지 대책 등 정책 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부대의견)	예산 조정 필요	양식장 유입수의 UV 등을 이용 한 소독으로 쿠도아 저감화 연구 를 진행 중이며, 2017년 9월부터 유입수 소독이외 대체 방법으로 종묘 입식 전 쿠도아 감염증을 예 방하는 관리방법을 시행할 예정 임. 아울러, 쿠도아 감염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한 2018년 예산안(3억원) 반영을 추 진 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1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경쟁을 통해 수산과학관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한국수산회와 위탁계약이 완료되는 시점(2017.12.31)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정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행자부 주관, 국회 안행위 심의중, 2017.4 ~)을 감안하여, 법률안의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 안정, 전시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1회(2년)에 한해 계약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해양수산부는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수요를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사업수요 확대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2.5%)하고, 사업방식을 전환(융자→이차보전)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18년 예산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
13	해양수산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주무부처인 우리부 주도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산림청]			
14	산림청은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임목 등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주의)	예산 조정 필요	산주·임업인의 자연재해 피해경감과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2018년 요구예산 1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舊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소관 시정요구 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舊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국민안전처는 해경 헬기의 다기종 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종 단순화 방안 검토 및 주·야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헬기 배치 등 운용체제 재점검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매년 1~2대씩 일반경쟁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 때문에 다기종이 된 것으로, 한해에 여러대를 일괄 계약하여 기종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향후 노후헬기 대체 등 헬기 추가도입으로 주·야간운항 가능 항공대 확대 할 예정임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42건으로 시정 9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101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31건이며, 조치중 1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에너지 R&D 전담기관의 운영예산 분리편성의 실효성 확보 필요’ 등 5건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7	27	51	85	77	8
중소기업청	2	4	32	38	37	1
특허청	0	1	18	19	17	2
합계	9	32	101	142	131	1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중소기업청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에너지 R&D 전담기관의 운영예산 분리편성의 실효성 확보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R&D 전담기관(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운영 예산(인건비·경상경비)과 특허동향조사·평가위원수당 등 R&D 사업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기획평가관리비로 전액 지급하던 인건비를 에너지기술 R&D관리기관지원 사업예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토록 2018년 부처 예산안에 일부 편성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예산요구안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 예산과 분리 편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요구안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인건비 중 일부 예산을 기획평가관리비와 분리하여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향후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이 반영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동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인 사항으로 보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노력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은 다른 내역사업과 통폐합하는 등 융자 수요를 반영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분야별 실집행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지원사업은 201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절약시설투자사업과 통합·운용하고 있고, ESCO투자사업은 2015년 실집행액(1,631억원)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에 1,500억원을 편성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는 ESCO 투자사업의 2017년 예산 편성 금액(1,500억원)이 2016년도 집행액(1,235억원)보다 많아 실집행이 부진해 질 우려가 있다.

2016년 ESCO 투자사업의 실집행액은 예산(2,250억원)의 54.8%인 1,235억원에 불과하고, 2017년 예산 편성액(1,500억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 중단을 제한하여 대출수요가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신재생설비가 지원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자금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미리 추천서를 받아간 신청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실패로 인해 2016년도 포기·취소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ESCO 투자 사업 대기업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SCO사업 지원액	2,766	3,097	2,540	1,631	1,235
대기업 지원액	1,407	835	513	31	0
비율	51	27	20	2	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SCO 투자 사업 자금추진 포기·취소 비율]

(단위: 건, 억원, %)

구 분	총 추 천		포기·취소			인 출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비율 (B/A)	건수	금액
2015년	104	1,909	21	261	13.7	83	1,631
2016년	112	2,229	32	962	43.2	80	1,23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은 2017년에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2017년의 용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용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용자 규모를 추가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3)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 창업실적 저조 문제(舊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의 창업률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의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대해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사관학교의 업종별 전문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희망멘토단을 구성하는 한편,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교육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현지 경험자 위주로 인큐베이팅 기업을 선발하는 등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소기업청의 조치완료에도 불구하고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의 창업률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16년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사업의 수료인원은 76명으로, 이 중에서 실제 창업한 인원은 4명(5.3%)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창업률 5.8%, 2015년 창업률 3.0%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소기업청의 사업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舊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실행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동 사업의 실행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 평가시 외부전문가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최종 선정시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소기업청의 조치결과는 2016년에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실행행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2016년도 실행행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개선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1,000억 6,200만원 중에서 587억 100만원이 실행행(58.7%)되어 2015년(59.8%)보다 실행행이 저조하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부터 사업대상 선정시 지원예산의 135%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하여 부지매매 계약서 및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행단계에서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것에서 연차별 분할집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실행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행행률을 개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특허청 여유재원의 축소를 위한 노력 필요(특허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특허청의 여유자금의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여유자금 일부를 특허권자들의 권리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시 중소기업지원 및 특허심사 품질 강화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 등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6년 7월부터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7~9년차 등록료 3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허심사 품질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지재산권분쟁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특허청의 조치결과는 2017년 예산의 여유자금¹⁾이 2016년에 비해 304억원이나 증가한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2017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과 관련된 수입(책임운영기관 사업 수입) 예산은 2016년 예산 4,587억 2,000만원보다 231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7년 특허청 예산의 총지출은 심사관 인력 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예산의 확충에서도 불구하고, 2016년 4,065억 7,400만원보다 9억 7,600만원 감소한 4,055억 9,800만원만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여유재원은 1,351억원으로 2016년 여유재원 1,047억원보다 오히려 304억원 증가하였다. 더욱이, 2017년 특허청 총수입¹⁾ 4,841억원의 28%가 지식재산권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여유재원으로 남는 것은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여유재원 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공자기금 예탁금	580	532	1,008	285	424	2,829
일반회계 전출금	-	-	-	762	927	1,689
합 계	580	532	1,008	1,047	1,351	4,518

1)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1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구조 개선 필요’ 등 3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유자금 규모 축소 및 운용 수익률 제고’ 1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행행 부진 해소 필요’ 등 3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로봇랜드 집행관리 철저’ 등 4건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산업통상자원부]			
1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포함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구조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에특회계의 현행 세입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입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2017.3월). 향후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임. 다만, 에특 세입구조 개편은 석유, 가스등 에너지원별 조세·부과금등의 세율, 부담금 조정 등을 위해서는 종합적·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2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에 대한 처리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별도규정이 없는 방폐기금 기술료는 '17년부터 산촉기금에 편입하고 있음. 또한, 전력기금 기술료는 소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2017년말) 후 산촉기금으로 편입 예정임
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는 지출,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지출 규모를 확대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효과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방안을 모색할 것(주의)	예산 조정 필요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또한, 여유자금 운용시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행 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4	산업통상자원부는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부진 요소(공사 시공업체 소송)가 해결되었으며, 향후 실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교부 예정임
5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한석탄공사는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감원한 인력 대신 도급인력을 채용하여 석탄을 생산하는 것은 지양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재무전망 기본안(17년 부채 18,598억원) 대비 자구노력(1,824억원)으로 부채 증가를 축소하는 계획(2017년 부채 16,774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대한석탄공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2016.6월)한 대한석탄공사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2017년 감산(전년대비 78천톤), 감원(103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생산구역 폐쇄를 통한 감산 및 감원 계획 수립 중임. 또한, 2017년 도급 석탄 생산 16천톤 축소를 추진(2016년 106천톤 → 2017년 계획 90천톤)하고 있음
6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 로봇랜드의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초 기대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민간투자 유치 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인천로봇랜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주)인천로봇랜드에 증자(20억원)를 결정(2017.7)하고, 로봇랜드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있음
7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현행법상 제도 활용을 검토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실집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2단계 타당성 검토시행 및 사업별 진행사항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별 담당자운영, 현장 특별점검 등으로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2016.12)심의·의결에 따라 이월금 미집행 지자체(61억/38개사업)에 대해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중(60%집행/6월기준)이며 해당 사업비는 미집행시 연내 회수를 확정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8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 및 감시 사업 수요조사 등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舊중소기업청 / 現중소벤처기업부]			
9	중소기업청은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와 시니어 창업스쿨 등의 창업·취업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은 창업선도대학과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합하며, 창업대학원 사업은 재검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창업지원법을 개정(2016.11월 상정 및 법사위 소위 심의 중)하여 창업진흥원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중이고,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창업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창업스쿨 수료생이 창업센터의 입주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창업→보육’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함. 20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과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합할 계획이며, 창업대학원 예산을 2016년 9억원 → 2017년 7.2억원으로 감액하여 정부 지원을 축소하였음
[특허청]			
10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사업실적 관리 정확도 제고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4개 IP-DESK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을 반영하여, 1개소(청도)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역(상해, 광주, 호치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공고 중이며, 향후 미 채용지역은 비상근 고문변호사 등 협력로프를 활용한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임
11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7월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인증 항목 중 직무발명관련 부문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개정할 계획이며, 2018년 1월에는 2018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심사기준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가점 부여를 추진할 계획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57건으로 시정 7건, 주의 35건, 제도개선 115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37건이며, 조치중 2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조정계수 반영을 통한 생계급여 사업 감액편성 지양 필요’ 등 8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6	31	90	127	113	14
식품의약품안전처	1	4	25	30	24	6
합계	7	35	115	157	137	2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1	1	0
합계	1	1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조정계수 반영을 통한 생계급여 사업 감액편성 지양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의무지출 사업인 생계급여 사업 예산에 재정절감 명목의 조정계수(△3,868억원)를 계상하여 예산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생계급여 등 의무지출사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해당 예산이 재량지출 사업으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생계급여 예산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최대급여액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충분히 추계하여 2016년 대비 3,463억원(10.6%)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생계급여 조정계수는 정밀하게 추계하여 2016년에 비해 717억원 감액한 1,453억원을 반영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정계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완료 보고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16년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는 2,171억원의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1,16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연말에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자활사업에서 전용을 통해 12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2017년에도 1,453억원의 조정계수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어 조치완료 보고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생계급여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조정계수를 통해 감액 계상하는 것은 예산 부족만을 야기하여 다른 사업 예산에서 이·전용하거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만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조정계수를 통한 감액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추경, 이·전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의무지출사업인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진료비가 부족하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비용을 수반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968억원)으로 2015년 미지급금 해소를 완료하였고,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 노력을 지속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2,258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15년 미지급금을 해결하였다고 하나, 2016년 추경에서 968억원(정부안 168억원, 국회 증액 800억원)이 반영되었음에도 2016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2,258억원에 달하고 있어 2015년도에 비하여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조치완료 보고는 적절치 않다.

연례적인 미지급금의 발생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재정절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인데, 보건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의 재정절감액을 통해 감액 편성을 하고 있어 미지급금의 발생을 심화시키고 있고,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지급금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금 징수노력 제고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수납율이 19.7%에 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반납하여야 하는 집행 잔액을 후순위로 배정하여 반납을 지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미수납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미수납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원활하게 반납되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미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장기간 반납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미반납이 집중되고 있어 적극적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자치단체보조사업 반납금의 미수납 내역을 보면, 2012년에 반납받아야 할 보조금조차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전체 미수납액 848억원 중 540억원(64%)을 반납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미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선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국립병원 임상연구비(R&D)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각 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하여 의사와 공중보건 의사 대부분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등 임상연구비 사업 참여자와 평가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임상연구비 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처우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임

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개선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상연구비 지급 심사 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 선정 및 평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상연구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존 요건을 추가, 변경하는 등 「임상연구규정」을 개정하여 임상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병원 내부의 의사, 공중보건의 등의 인건비 보조수단으로 집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연구수당 신설 등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과의 계약을 통해 연구용역비가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기관 내부에서 연구과제가 결정되고 연구활동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과제선정의 공정성 및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한 연구결과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임상연구비 지급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임금격차가 있는 공무원인 의사 등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나 임금보전 수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구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임상연구비(R&D)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5)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조치완료 보고 부적절(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분만취약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치료보호사업의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이거나 수행완료를 이유로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용역 진행중이거나 완료로 시정요구사항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례]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 재검토 등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 선정기준 개선(2017.3) * 비수도권·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 우선 선발 등 - 전공의 정원 정책 반영을 위한 전공의 수요추계 연구 착수(2017.3 공고 개시)
(3)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 필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의료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완료 *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2016.11.30.)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연구 수행 중 (2017.4~11) * 의대, 간호대 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기간에 따라 2~5년까지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16) 분만취약지 지정기준 및 지원방식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분만취약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2016.9~11) - 분만취약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정 계획(2017이후 지정주기1년 → 2년)
(42) 마약류중독 자 치료보호사 업 활성화 및 치료·재활 연계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사업의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간 협의하여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류중독 예방·치료 및 재활이 일관된 정책 하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 치료보호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2016.11.30)

주 : 표의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상황은 2017.4.30.기준 모두 “조치완료”로 보고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제도개선이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용역 발주나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연구결과가 제도개선이나 방안 마련 등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은 제도개선이나 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이지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제도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일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착수만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조치상황 보고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여부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점 해결이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 내용의 변화 없이 연구용역 수행 여부만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6)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수도권·대형병원 편중으로 오히려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일회성 단기해외연수는 기피 과목 충원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공공·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전공의 정원 정책 반영을 위한 전공의 수요추계 연구를 착수(2017.3 공고 개시)하였으므로 조치결과 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첫째, 국회의 시정요구는 동 사업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만으로 조치완료 하였다고 보고하여 국회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수도권·대형병원 편중 문제와 함께 일회성 단기해외연수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대형병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만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정요구사항 중 하나인 일회성 단기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았다. 실제 기피과목에 대한 단기해외연수 지원에도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일부 기피과목들은 충원률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도 마련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연구용역 공고만으로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책 반영을 위한 전공의 수요추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연구용역은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9월 이후에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 방향이나 계획 등이 결정될 것이므로, 연구용역 발주만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조치완료로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7) 축산물 HACCP컨설팅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지원기준 마련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7년부터 HACCP 제도가 통합될 예정이나 그 동안 식품 HACCP과 축산물 HACCP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지원제도 운용상의 차이점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인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지원제도를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까지는 식품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되 컨설팅비 지원이 없었고, 축산물은 시설개선자금은 지원하지 않으나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등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동일하게 둘 다 지원·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조치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지원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식품분야는 HACCP 컨설팅비와 시설개선자금 지원 시 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21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축산물분야는 시설개선자금만 소규모 업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컨설팅지원은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컨설팅지원 사업은 2015년까지 축산물분야에만 지원되었는데, 이때까지 매출규모나 종업원 수 등 제한이 없었고 동 기준을 2016년에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컨설팅 지원이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보조금이고, 또한 업종 간 예산지원의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과 축산물 분야의 지원기준을 유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8) 의료기기단속 담당자 확충 미흡(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이 전국 6개 지방청에 15명밖에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담당자를 확충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2015.8.11.)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수사권을 확보¹⁾하였고, 「의료기기법」 개정(2015.12.29.)을 통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총 601명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운영 중(2016.3월~)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을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1) 수사전담부서(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에 지적되기 전에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단속을 위한 담당자 수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016년 9월에 의결된 내용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결과로 제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2015.8.11.), 「의료기기법」 개정(2015.12.29.),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운영(2016.3월~) 등은 모두 시정요구사항이 있기 전에 결정된 내용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지명하고, 601명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하여 의료기기 단속 업무에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요구사항이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담당자를 확충할 것’인데, 2017년 6월까지도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은 여전히 15명이며, 의료기기 단속 담당자 확충의 최종 목표가 의료기기 단속 인력 증원을 통한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에 있는 만큼 의료기기 단속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0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5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사업의 건강보험재정사업으로의 실시 부적정’ 등 2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 조속 마련 등’ 등 4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부도병원 미수납 채권 처리방안 마련 필요’ 등 9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재원확보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수정·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주의)	법령 개정 필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정부 위원 수를 줄이는 내용(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보훈처장 삭제)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중이며, 2017년 7월 기준 법제처 심사 중임
2	보건복지부는 누적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립금의 적립기준과 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제도 개선)	법령 개정 필요	건강보험 적립금 기준의 경우 준비금 비율 조정에 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적정 준비금 수준 논의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3	보건복지부는 법적근거 없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4.14.)이 발의되어 있음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효과성·형평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2018년 7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는 적정한 부담을 하게 되므로, 개편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경감제도의 추가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또한,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임
5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6년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 기준정비, 만성질환자에 대한 경증약제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환경보건과 관련한 역학조사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구체적인 원인미상 질환 역학조사 절차 마련을 위해 「원인불명 호흡기질환 대응 지침」 제정을 진행 중이며, 지침 제정 후 시도 감염병담당자 및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7	보건복지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5월에 기초연금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에 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계획임
8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신규 예산사업에 건강보험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출 등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9	보건복지부는 미수납 채권의 수납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수납 채권 회수불가 판단시 불납결손 처리 등을 통하여 세입 추계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할 것(주의)	대책 수립 중	현재 부도처리된 병원에 대한 차관 상환을 위해 관련 조치(소멸시효 연장, 채권확보, 소송, 독촉, 고지서 발급 등)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상환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 도래 전까지 부도병원 채권 상환 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채권 확보 및 미수납 채권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10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및 재평가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및 인증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사항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2017년 말까지 인증기준과 인증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11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7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검토 등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2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동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13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및 이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및 부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및 부담 대책에 관한 연구(건강보험정책연구원)를 진행 중으로, 2017년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할 예정임
14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능력과 재정부담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기초연금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율 설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국고보조금 기준 변경 시 각 지자체별로 재정부담의 상반된 결과(현행 대비 이익·불이익)가 발생하게 되므로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방청 위해사범조사 전담조직을 TF가 아닌 정규 직제화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2016년 12월 식약처 특사경 직무범위에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식품의약품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원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 법률안 개정시 지방청 위해사범조사TF 정규직제 및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예정임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적으로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2017년 전국 7개 시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전국(17개 시도)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예산 확보 추진 중(‘17년 373백만원→‘18년요구 816백만원)임
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 11월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 3년차(‘17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R&D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식약처 승격(‘13.3)이후 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연구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자체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직제개편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인력증원은 어려우므로 연구부서 업무부담 완화 등 업무체계 개선을 통한 상향조정 노력 중임
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인허가 심사지원 등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예산편성 시 여가부, 기재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가 및 기존 사업을 성인지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최종 2018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지속 노력할 예정임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연간 적정 물량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물량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백신 안전관리협의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민원설명회 등을 통한 백신 연간 적정 물량 예측 및 폐기 물량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41건으로 시정 11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4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24건이며, 조치중 17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등 5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8	27	21	(0)	56	51	5
고용노동부	3	3	67	(0)	73	61	12
기상청	0	7	6	(1)	12	12	0
합계	11	37	94	(1)	141	124	1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1	1	0
고용노동부	1	0	1
합계	2	1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실적이 충전소 부족 등으로 2015년 신규 등록차량의 0.19% 그리고 하이브리드차량은 국내 제작차량이 2종에 불과하여 2015년 신규 등록차량의 2.6%에 미치는 등 전반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실적이 미흡함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시·도 조례에 의한 충전기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인상(1,200만원→1,400만원),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조정 등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첫째,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대비 보급실적이 여전히 미흡하여 2016년 신규 등록차량 전기자동차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물량은 전년 3,000대 대비 10,100대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6월 신차 출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동 신차를 출시하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파업과 해외수출 물량 증가로 국내 보급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5,914대만이 보급되었다. 이러한 보급부진으로 인하여 2016년 신규 등록차량 중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저조하다.

둘째, 완속 및 급속충전기 보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매보조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격차로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구매패턴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완속 및 급속충전기 보급계획 물량은 각각 10,000대와 330대였으나 실제 보급된 물량은 계획대비 31%와 45.5%에 해당하는 3,108대와 150대로 충전기 보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자동차와 차량가격이 1,950~2,952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201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1,4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등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기 보급실적 제고와 더불어 내연기관자동차와의 가격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2)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15년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 100억원 중 97억원이 이월되었는데, 환경부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강산업 이외의 산업으로 사업범위 확대, 대상지역 및 수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고,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중국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16년에는 2015년 구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역과 대상산업분야 확대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중으로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2015~2016년간 한·중 기업간 계약실적이 미진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저조하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은 매년 협력사업의 총 규모를 500억원으로 하여,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정부가 20%, 중국정부가 20%, 중국업체가 60%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에는 한·중 기업간 프로젝트 계약 실적이 전무하고 2016년에는 5건에 그쳐 2015년 사업비는 2016년에 집행되고 2016년 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5	10,000	10,000	0	10,000	334	9,666	0	3.3
2016	10,000	10,000	9,666	19,666	10,045	9,621	0	51.1

자료: 환경부

이러한 한·중기업 간 프로젝트 계약실적 부진은 미세먼지 발생지와 수원지로서 한·중의 특수관계 등에 대해 양국 기업간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중국정부와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고취함으로써 동 사업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추경 편성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추경이 편성된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추경 집행부진 사업은 2018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등으로 실적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2016년 추경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2017년 제1회 추경 편성에서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으로 다음 표와 같다.

주요사업에서의 추경증액 4,552억원 중 1,826억원이 불용되어 추경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업 지원 목적으로만 추경이 편성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등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369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128억원이 불용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468억원이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나 동 사업에서 2016년 443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은 311억원이 추경예산에서 증액되었으나 동 사업에서 2016년 202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2016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추경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기금	본예산	추경증액	추경예산	결산액	불용액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회계	313,557	35,805	349,362	324,623	24,739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일반회계	43,815	29,034	72,849	62,369	10,480
해외취업지원	일반회계	40,998	2,470	43,468	42,824	644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반회계	0	36,912	36,912	24,104	12,808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기금	31,406	46,800	78,206	33,870	44,336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보험기금	101,327	84,966	186,293	186,219	7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	98,932	31,100	130,032	109,815	20,217
전직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고용보험기금	494,923	119,706	614,629	577,755	36,874
장년고용지원금	고용보험기금	28,187	5,088	33,275	32,031	1,244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고용보험기금	526,311	17,475	543,786	515,721	28,065
채당금지급	임금채권 보장기금	326,004	45,848	371,852	368,710	3,142
합 계		2,005,460	455,204	2,460,664	2,278,042	182,623

주: 일부사업은 추경목적 이외의 자체변경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4) 재활공학연구소의 자체수입 확대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자체수입 부족에 따른 예산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자체수입이 감소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재활공학연구소의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재활공학연구사업 중기(2017~2021) 발전방안」(2016. 10)에 첨단보조기구 연구개발 강화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자체수입 비중이 하락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기 발전방안의 충실한 수행 등 지속적인 수입 관리가 필요하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자체수입 확대 노력 시정을 요구한 것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자체수입 부족에 따른 예산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재활공학연구소의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67.4%에서 2015년 54.4%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활공학연구사업 중기(2017~2021) 발전방안」(2016. 10)을 마련한 것으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2016년에도 동일한 집행상의 문제가 재현되었으므로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2016년 출연금 49억원과 자체수입 86억원을 합하여 135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자체수입 실적은 52억원으로 34억원이 부족하여 재료비 위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다. 특히, 재활공학연구소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4.4%에서 2016년 51.5%로 더 하락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재활공학연구사업 중기(2017~2021) 발전방안」(2016. 10)상의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활공학연구소의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기상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계약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2015년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이 지연되어 동 항공기를 활용한 기상 연구를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도입을 예상하고 미리 체결한 항공기 위탁 운용 계약도 조종사에 대한 재교육,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상청은 다목적기상항공기와 같은 주요 기상장비 도입 시 납품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상청은 외부 전문가와 상세설계 검토회의 실시, 두 차례 현지 제작사 방문을 통한 개조상황 점검, 공정현황 자료(격주단위) 점검 등을 통하여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상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첫째, 2016년에도 다목적기상항공기의 도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는 보완된 사업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다목적기상항공기의 국내 도입을 목표로 재개조가 이루어지고 부가형식증명 승인을 받기 위한 미연방항공청의 비행인증시험 신청을 7월에 하였으나, 동 시험이 지체되어 그 결과가 12월에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2016년에도 도입되지 못하고 2015년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되었으며 2017년 현재 부가형식증명 승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5	5,600	0	479	6,079	2,426	3,653	0
2016	0	3,653	0	3,653	0	3,653	0

자료: 기상청

둘째, 부적절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위탁업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상청은 다목적기상항공기의 항행을 위하여 2015년 외부 전문업체인 (주) 케이바스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44억 6,900만원의 ‘다목적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2015. 7. 16 ~ 2017. 12. 31)하였다.

동 위탁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다목적기상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기상장비 운영자의 국내외 교육을 포함한 위탁사업의 예산은 9억 3,200만원인데, 위탁사업 계약이 연도 중에 체결되는 관계로 4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5,800만원은 불용되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의 과거 사업상의 문제로 ‘다목적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용역’ 대가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3회에 걸쳐 설정되었다. 이로 인해 위탁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수반되는 위탁업무가 지연되었으며 결국 2016년 위탁사업비 19억 1,1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다.¹⁾

[다목적 기상항공기 위탁운영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5	932	0	932	474	0	458
2016	1,911	0	1,911	0	1,911	0

자료: 기상청

다목적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지연으로 당초 동 항공기의 2016년 현업 투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기상항공기 도입업체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및 부적절한 위탁운영업체 선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더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및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1) 기상청은 2017년 1월 4일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2월 3일 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8건을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근거 마련’ 1건이고,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회수 필요’ 등 6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수도용 자재 등 인증기관 발전방안 마련 필요’ 등 11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환경부]			
1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추정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총 99개 사업 보조사업 중 94개 사업이 반납 완료(2017년 6월말 기준)하였으며, 미반납중인 5개소는 하반기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임
2	민간업체의 폐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이용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 동 사업 추진시 위탁사업비(210-15목) 또는 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 비목을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 제36조(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정보 제공)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17.5)하였고, 순환자원정보센터 조직개편안 마련(2017.6월)하였으며, 근거법령 제정으로 18년 예산 요구시 민간대행사업으로 비목을 변경하였음
3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도용 자재 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운영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증기관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인증기관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수도용자재 관련 국내외 인증제도 조사분석 연구용역을 실시중(한국표준협회, 7월 완료예정)이며, 인증기관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 발전방안(안) 마련(2017.10월)한 후, 타 인증제도 운영방식,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인증기관 발전방안을 수립(2017.12월)할 예정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4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 마련(2017.6월) 등을 추진하고 있음
5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시·군·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징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징수비용 보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징수비용보전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함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는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관해 관련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반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임
7	성과 제고를 위해 향후 산재예방사업 성과목표 설정시 과거실적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5월 2018년도 성과계획서(요구안) 작성 시 과거 추세치,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함
8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충실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제도개선)	개선 방안 시행 중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고보기금에서 지원하던 고객상담센터 인건비는 일반회계 이관 완료하는 등 기금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함
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여성아파트 관리운영 사업이 지속적으로 존치필요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전체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2016.9.19.)하였고, 사업 환경조성 및 입주기간 종료에 맞추어 행복주택 착공 예정(2018.10)임
10	고용노동부는 청장년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 청장년이 상생하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부대의견)	개선방안 시행 중	청장년 상생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2016.7월, 9월)중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1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에 임금수준 등을 포함하고, 정규직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율의 단위기간을 확대(2년 이상)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3년 주기) 평가 시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을 분석할 예정임
12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제도 개선)	대책 수립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13	사업 추진시 이행관계자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면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 개선)	대책 수립 중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성과평가(2017下)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진행 중) 실시 결과와 연계하여 협의 및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14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급여의 고용보험기금 부담 완화 및 비정규직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8년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모성보호급여 소요예산액 1/3수준)를 요구하였고, 부처간 재원개편 방안 추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명문화에 대한 입법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 또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장애요인인 대체인력지원금 및 대체인력채용 지원 서비스 업무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
15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자 급증과 고용불안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실업급여 적립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개선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상태의 개선이 어려우므로, 2018년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모성보호급여 소요예산액 1/3 수준)를 요구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화 입법 노력을 병행 중임
16	근로복지공단은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할 범위 한계를 초과한 수원지사 관할 분할 및 화성지사 신설 추진 등 고객접근성 및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사 신설 및 인력 증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임
17	고용노동부는 뿌리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 유연성을 높이고,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파견대상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파견대상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노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18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면접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문화가 확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국토교통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15건으로 시정 50건, 주의 33건, 제도개선 3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105건이며, 조치중 1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에서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중 확대 필요’ 등 6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시정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48	27	31	106	97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5	0	6	5	1
새만금개발청	1	1	1	3	3	0
합계	50	33	32	115	105	1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7.5)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2017.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중 확대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공공주택 건설사업 중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사업의 예산 비중이 당초 계획액 기준으로는 44.3%였으나, 집행액 기준으로는 37.8%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도 추진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의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집행액이 당초 계획액의 63.7% 수준으로 매우 부진하다.

국민임대사업은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게 30년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기금 출자금 30%, 기금 융자 40%, 임차인 보증금 20%, 자체부담 10%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2016년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 당초 계획액은 1조 258억 7,300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6,531억 4,400만원으로 63.7%만이 집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 지연과 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2016년 국민임대주택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당초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국민임대(용자)	708,594	415,720	58.7
국민임대(출자)	317,279	237,424	74.8
합계	1,025,873	653,144	63.7

자료: 국토교통부

결과적으로, 국회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의 경우 예산 집행이 부진하여 향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2)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미집행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추진상황과 목별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부진 사업의 특별관리 및 매월 집행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집행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며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출연금 실집행 단계에서 민원발생,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6년에도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집행부진 사업 특별관리 및 매월 집행실적 점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5조 6,699억 8,700만원 중 3조 4,230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이 2조 2,399억 1,300만원(집행률 60.4%) 발생하여 집행 부진이 2015년(집행률 75.5%)보다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철도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민원발생과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연 외에도 터널암질 불량, 행정절차 지연 등 최초에 사업계획을 엄밀하게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조속히 수행하는 경우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일반철도 사업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월 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철도 구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내외부적 사업여건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을 엄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광역 BIS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BIS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보조금 이월집행이 예상됨에도 2015년 3월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미흡하므로, 자치단체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등 적절한 사업관리를 통해 동 사업 보조금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보조금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예산 집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재정집행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201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여부, 연내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반기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보조금을 2회에 나누어 보조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 상황과 무관하게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게까지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8개 구간의 광역 BIS 구축 사업 가운데 6개 구간의 실행률이 70.0% 미만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광역 BIS 지원 사업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LPG 가격 하락으로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에 대한 운수업계의 참여가 줄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LPG 가격 하락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추가 지원은 어렵다며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CNG택시 개조의 수요 부족으로 CNG택시 개조의 성과가 연례적으로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CNG 택시 개조지원 사업의 예산 1억 4,400만원을 전액 교부받아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실집행률이 4.9%로 나타나 2015년에 이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LPG 가격 하락이 사업 집행 실적 부진의 원인이며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LPG 가격 하락으로 한정하고 뚜렷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LPG 가격의 추이와 CNG 택시에 대한 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강구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2015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32.2%)에 비해 실제 도입률(20.7%)이 저조하므로,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국고 보조금 배분 개선,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차등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2021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42%로 설정하였으며,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통한 보급률 제고를 추진 중이라며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차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2016년 저상버스 도입 추세를 고려하여 제3차 계획의 목표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저상버스 유지관리비용 부담 및 차량 대폐차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발생 등 저상버스 도입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폐차 저상버스가 반드시 저상버스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목표를 산정하는 등 제3차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형 저상버스의 보급은 당초 2차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가 3차 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로 지연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제3차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제약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사업 재개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공연장 규모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트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2016년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트센터 건립규모를 1,000석으로 확정 하여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6년 11월 기본설 계에 착수하여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공연장 규모 확대와 관련한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2016년 10월에 완료되는 등 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2016년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0년 12월 대공연장 700석과 소공연장 300석 규모를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AHP¹⁾ 0.514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3년 5월부터 대공연장 700석 과 소공연장 300석 규모의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양한 공연장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000 석 이상의 대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기본설계용역을 중지하였고,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을 전제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10월 AHP 0.391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1)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대해 일정 가중치를 두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38조)

[아트센터 건립 규모 관련 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010. 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10. 12)	타당성재조사 결과 (2015. 10)	총사업비 조정 (2016. 10)
공연장 규모	대공연장	1,100석	700석	1,200석	1,000석
	소공연장	500석	300석	300석	없음
총사업비		111,951	85,732	119,056	90,533
사업기간		2011년~2014년	2011년~2014년	2012년~2018년	2012년~2019년
타당성			B/C: 0.91 AHP: 0.514	B/C: 0.76 AHP: 0.39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와 같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2015년 10월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6년 10월에야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기본설계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 사업의 2016년 예산 22억 3,600만원 중 2억 2,000만원만 집행되고 20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집행률이 부진하였다.

다.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10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 1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진에 취약한 취수탑의 보강대책 마련 필요’ 등 2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예산의 재재이월 시정 필요’ 등 4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3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지적된 26개 정보시스템 중 16개 시스템은 2017. 6월 현재 법령 개정 및 시스템 폐지 등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시스템 중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2017.2.14)되었고 기타 9개 시스템은 2017년내 또는 2018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임
2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취수탑에 대한 안전성 개선사업 시행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2016.8)되고, 2018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용 2018년 예산(100억원)을 요구하였음
3	국토교통부는 「댐 설계기준」에 맞게 적정규모의 비상방류설비 설치 및 비상방류설비의 적정규모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2016.8)되고, 2018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용 2018년 예산(100억원)을 요구하였음
4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사업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의 재제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2015년도 결산 시 지적된 서울 전농답십리지구 등 6개지구의 3회계연도 내 미집행 금액(45억원)에 대하여는 5개 지구는 반납 완료하였으며, 1개 지구는 미반납하여 지속적으로 반납 촉구 중임
5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미착공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 지출을 위해 실제 착공 가능한 규모로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시정)	개선방안 시행 중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미착공 물량을 해소해 왔고, 2017년도 약 6.7만호의 미착공 물량을 해소할 예정이며, 2018년 예산편성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착공 가능물량을 반영할 계획임
6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3월 품셈개선, 수립권역 재편, 국가지자체 역할분담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을 정상화하고, 관련 계획과 연계도를 강화하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완료함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7	국토교통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2017년 예산 250억원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중이고, 2018년도 사업이 지속추진 되도록 재정당국에 예산 요구 중이며,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향후 재정당국과 5년단위 시설개선 사업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8	국토교통부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남강댐 치수 능력증대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한 임시적 치수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2017년 예산에 치수대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2.5억원)가 반영되어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2017.11)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비용 2018년 예산(9억원)을 요구 하였음
9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체 구간에 관한 사업추진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시정)	대책 수립 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목포는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16.8~)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고, 노선 이 건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 기존선 고속화는 궤도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2016.12~)하였으며, 2017년 전 분야 공사 착수 예정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주의)	개선방안 시행 중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은 없으며, 지적된 3개 사업 중 오송-청주공항 추경편성액은 2017년 6월 집행 완료 하였으며, 행복도시~공주, 오송~청주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는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재이월 되었으나, 2017년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6. 여성가족위원회

가. 현 황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47건으로 주의 9건, 제도개선 38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가 39건이며, 조치중 8건으로 보고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7년 4월말 기준 조치완료 1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17.4.30.)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9	38	47	39	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2017.5)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2	1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2017.5)

나. 정부 조치 미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9건을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중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강화’ 1건이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 등 2건이다.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사항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 등 4건이고, 대책수립 중인 사항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집행부진 개선’ 등 2건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미완료 사항]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는 호주, 프랑스의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을 벤치마킹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제도개선)	법령 개정 필요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권한 강화 및 현장기동반 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임
2	여성가족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회계·기금 이관을 포함하여 기금 재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부족 및 복권기금 의존도 편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3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사업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마련할 것(제도개선)	예산 조정 필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 중임
4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는 성인지 결산 우수사례 보급,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 및 부처별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의견서’ 제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3건) 및 일부이행 과제(3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출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6년부터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컨설팅을 강화하였고, 성과목표를 2년 이상 미달성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미달성 원인분석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2016년 11월 중앙행정기관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 저조 부처(대법원, 기재부 등)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향후에도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 할 예정임

연번	시정요구 사항	조치중인 사유	향후 조치계획
5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등 동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였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의 개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 필요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2017년 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6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트로 확대하고, 저학년을 위한 인터넷이용습관 진단조사 방식을 개발하며, 어린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 및 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저연령층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추진검토를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을 관계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요청함
7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백서를 속히 마무리하여 발간하도록 하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부대의견)	개선방안 시행 중	2017년 5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발간을 완료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사업은 현재 수행기관을 선정(2016.12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8	여성가족부는 자산형성계좌 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7조의4에 따라 2014.7.21.부터 자산형성계좌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산형성계좌는 청소년의 자활의욕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형성계좌지원 사업의 재개여부를 검토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자산형성계좌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존 사업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2018년 사업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9	여성가족부는 중장기적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개도국 내 인신 매매피해자 지원 사업을 개선·보완할 것(제도개선)	대책 수립 중	사업의 안정성,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ODA)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7.7월말 동 계획 수립 완료 예정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명현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작성 | 심지현 강건희 윤동한
정수현 어예원 전용수
김혜미 최선웅 한성진
윤성식 남희 강세욱
정원철 강상규 김성은
온세현 김태은 채미강
오명희 김경수 조흥연
조가영 오덕근

지원 | 유보연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Ⅲ

2015회계연도 결산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17년 8월 16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33-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